규약 · 규정집

2022년 9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OREAN FINANCE & SERVICE WORKERS' UNION

<차 례>

선 언 ····· 3
강 령 ····· 4
규 약 ····· 5
업종본부 운영 규정 ····· 31
조합비 규정 ····· 40
선출직활동비지급 규정 ····· 42
선거관리규정 ····· 45
회의 규정 ····· 62
기금운영 규정 ····· 71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 77
사무처 업무 및 운영 규정 ····· 81
단체교섭과 쟁의에 관한 규정 ····· 96
상벌규정 ····· 99
성폭력·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 ····· 105
여성·비정규·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 109
정보통신 운영규정 ····· 111
직인 관리규정 ····· 116
회계 규정 ····· 117
법률원 운영규정 ····· 127
교육원 운영규정 ····· 129
의무교육 운영규정 ····· 131
정책연구소 운영규정 ····· 134
여수신업종본부 운영 규정 ····· 137
생명보험업종본부 운영 규정 ····· 147
손해보험업종본부 운영규정 ····· 157
증권업종본부 운영 규정 ····· 168
지역본부 운영규정 ····· 178
공공금융업종본부 운영 규정 ····· 187
지부모범운영규정 ····· 197
우분투비정규센터 운영 규정 ····· 207
연맹해산에 따른 특별규약 ····· 209

선 언

노동자의 단결은 지배와 착취에 맞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거대한 물결이며, 모두가 함께 주인 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전진하는 발걸음이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했으며, 모든 억압과 차별을 거부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자들은 87년 민주화항쟁, 노동자대투쟁에서 선배 노동자들이 보여주었던 저항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통합과 단결을 실천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역사를 이어 노동이 주인 되는 세상과 민주노동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오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힘차게 건설한다.

우리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외가 없는 모두가 건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과의 굳건한 연대와 단결을 통해 이윤이 중심이 되는 질서를 거부하고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억압과 차별의 철폐,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강 령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계승하여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에 앞장선다.
- 우리는 성, 국적, 장애, 고용형태, 인종 등 모든 억압과 차별의 철폐, 인간 존엄과 평등 실현의 사회를 건설한다.
-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우리는 자본 중심적 복지, 교육, 문화, 교통, 토지, 주택, 여성, 환경 정책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정책을 생산하고 법. 제도 개혁에 적극 앞장선다.
- 우리는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경영참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한다.
-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강고한 투쟁으로 자본에 대한 규제와 함께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우리는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한다.
- 우리는 조합원 의식 강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을 통해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의 이해와 입장의 차이를 극복한다.

규　　약

2011.12.15.　　제정
2012.01.06. 일부개정
2012.03.06. 일부개정
2015.02.11. 일부개정
2016.01.06. 일부개정
2016.02.19. 일부개정
2018.02.07. 일부개정
2019.01.22. 일부개정
2021.02.04.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아래에서는 “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라 하고 그 약칭은 “사무금융노조”라고 하며, 영문표기와 약호는 “KOREAN FINANCE & SERVICE WORKERS' UNION (K.F.S.U)”로 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조합은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명예, 이익을 적극 옹호하고, 자주적 단결과 노동조건 향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사회 건설과 민주노동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기본권 확립과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보편적 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
2.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자의 단결과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4.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미조직,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와 차별 철폐에 관한 사항
6.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7. 성, 직종, 학력, 인종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철폐와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19.)
9. 관련단체 및 목적을 같이 하는 제 노동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0. 국제노동자 단결에 관한 사항
11.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관한 사항
12.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
13.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항
14. 그 밖에 조합의 강령, 선언,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1.06.)

제 2 장 조합원

제7조(조직대상) 금융산업 관련 업무 및 기타 사무 서비스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②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③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④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2.01.06.)
⑤ 가입, 탈퇴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권리) ① 조합의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소홀히 할 수 없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와 의결할 권리
3.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참여하고 조합 활동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
4.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결정사항 및 활동상황, 회계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기타 규약에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② 1항 1호의 피선거권은 가입 후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은 조합임원선거에만 적용된다. **(신설 2015.02.11.) (단서신설 2021.02.04)**

제10조(의무) 조합의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규약, 규정에 따른 모든 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3. 조합비와 규약, 규정에 따른 모든 기구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기구와 사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5. 신상 변동 상황과 활동을 보고할 의무
6. 조합이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신분, 신체 또는 재산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제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권리제한의 절차, 범위, 사유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조합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지회)는 소속 조합원 수와 조합비 내역을 매월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③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실업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로 정한다.

④ 조합비 납부 방법, 경감, 유예 등의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관과 회의

제14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상설, 특별위원회

제15조(기구) ① 조합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교육원
3. 법률원
4.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조합원의 복지,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②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각 기구의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절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규약과 규정에 의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만 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을 결정한 경우
4.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⑤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위원장은 의결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

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간 내에 총회 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변경 공고는 최소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되, 부의사항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7일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01.06.)**
⑦ 총회는 본부,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총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산별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 형태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01.06)**
6.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8.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9.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11.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2.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3. 징계에 관한 사항
14. 타 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15. 연합단체 파견대의원,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06. / 2016.01.06.)**
16. 조합의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6. / 2016.01.06.)**

제2절 대의원대회

제20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로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③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간 내에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가 이루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의원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5일, 제2항의 변경 공고는 최소 2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최소 7일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01.06.)

제22조(기능) ① 회계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③ 규약 제19조 제1항의 각 호 가운데 2호부터 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1.06. / 2016.01.06.)

제23조(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은 매년 임기 종료 전에 선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본부, 지부, 단위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자 중에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②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다음 대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대의원의 선출까지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한다.
③ 각 본부는 제1항의 정대의원 선출시 정대의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후보대의원을 선출한다.
④ 대의원의 결원은 제3항에 의해 선출된 후보대의원이 승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후보대의원이 없을 경우 대의원 선출방식에 의해 보궐선출한다.
⑤ 결원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않으며 대의원 정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⑥ 대의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배정기준) ①대의원은 각 본부에서 조합원 300명 당 1인을 선출하되 단수 151명 이상인 때 1인을 추가한다. (개정 2021.02.04.)
② 대의원 선출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전년도 12개월간 납입한 조합비 평균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5.02.11.)
③ 신규지부의 경우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입한 경우 대의원을 배정한다. (신설 2015.02.11.)

제25조(소환과 의무) ① 대의원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② 소환 발의를 받은 대의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③ 위원장은 소환 발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④ 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조합원 의견 청취, 활동보고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정지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6조(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의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지역본부의 본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각 본부의 대의원대회에서 구성한다.

제27조(선출과 임기) ① 중앙위원은 각 본부에서 조합원 1,000명당 1명을 선출하며, 1,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 조합원 501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다음 중앙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중앙위원의 선출까지를 임기로 한다.
③ 중앙위원의 결원은 그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중앙위원의 선출 방법에 의해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본부에 소속되지 않은 지부에 대하여 1항의 기준에 따라 중앙위원 배정단위를 정하고, 각 배정단위 소속 조직에 중앙위원의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02.11.)**

제28조(소환과 의무) ① 선출직 중앙위원은 해당 선출단위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5분의 1 또는 대의원 3분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② 소환 발의를 받은 중앙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③ 위원장은 소환 발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단,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④ 중앙위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조합원 의견청취, 활동보고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⑤ 중앙위원이 중앙위원회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정지한다.

제29조(소집) ① 정기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② 임시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들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의 결정을 한 경우
3.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간 내에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가 이루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중앙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중앙위원회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 결정 및 상정 안건에 관한 심의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본부·지부의 설치(지부·지회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의 지부설치), 본부·지부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개정 2018.02.07.) (개정 2021.02.0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벌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7.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8. 사무처 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9.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유고 시 보궐선거 여부에 관한 사항
10.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과 해산에 관한 사항
11. 각종 기금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06.)**
12. 예산의 전용 및 조정, 기금 및 경정예산의 사용,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3.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14. 징계에 관한 사항
15.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6. 본부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17.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임원(회계감사 제외)
2. 본부, 직할 의결단위에서 선임된 2인 단, 지역본부와 직할은 조합원 2천명 이상일 경우 2명을 배정한다. **(개정 2015.02.11.)**
3. 지역본부장
4.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5. 사무처 각 부서장

② **삭제 (2015.02.11)**

제32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33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안건 심의
3. 제 규칙의 제정 및 개, 폐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전용, 조정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단, 제30조 제4호 제외 **(단서 신설 2021.02.04.)**
6. 노동쟁의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본부·지부 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및 잠정합의안의 검토, 심의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계획 심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 주요 정세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열람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16.)**
12. 규정 및 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상무집행위원회)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사무처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3. 일상 업무 계획 수립 및 점검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부서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4. 그 밖의 조합 일상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절 단체협약위원회

제35조(구성) ① 조합은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두되 업종대표성을 고려한다.
②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고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단체협약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사업영역, 업종별 담당자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기능)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안과 해설안
2.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산별협약안 준비와 단계별 요구의 제출과 실천방안
4. 그 밖에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7조(구성) 조합의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5명 이내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8조(권한과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각 본부의 재정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개정 2021.02.04.)**
② 조합과 각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사를 한다.
1. 반기별 1회의 정기감사
   1) 조합 : 조합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감사
   2) 본부 : 조합 회계감사위원회와 본부 회계감사위원회 합동으로 감사
2. 회계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감사대상단위별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반기별 감사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감사 결과는 조합원이 알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지부는 매년 1회 예·결산 자료를 조합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구성) ① 조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7명으로 구성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현직 중앙집행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02.14.)**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 공고와 함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임원 임기에 준한다.

제40조(권한과 기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각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의 선거업무 관리와 소환 투표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통괄한다.
② 조합과 각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선거에 관한 규정 해석과 선거 관련 분쟁 조정 및 중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규약 해석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9절 위원회(개정 2018.02.07.)

제41조(설치)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여성위원회
2. 미조직비정규위원회
3. 정치위원회
4. 통일위원회
5. 상설위원회 **(개정 2018.02.07.)**
6. 특별위원회 **(개정 2018.02.07.)**

제42조(구성)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8.02.07.)**

제10절 삭제(2018.02.07.)

제43조(설치) 삭제 (2018.02.07.)

제44조(구성) 삭제 (2018.02.07.)

제45조(기능) 삭제 (2018.02.07.)

제11절 회의

제46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의 각종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 진행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각종 회의의 소집, 안건 심의, 의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특별의결)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4 장 임원

제48조(임원) 조합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3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 5명
6. 업종본부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49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6) 위원회 위원장, 부설 기구의 장 및 조합 사무처 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2.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3. 선출 부위원장

1)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지명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단. 지명이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결정한다. (신설 2021.02.04.)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영역별, 위원회별, 특성별 업무를 관장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합 제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2) 사무처 실·국장 임면 제청권을 가지며 조합 사무처 회의 및 본부 사무국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02.04.)

3)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현금 관리를 관장한다.

4) 각종 회의 자료 작성 책임을 지며, 질의에 대해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조합의 공식 대변인이 된다.

6) 회계감사에 응한다.

7)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감사

1) 조합,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며 매 6개월마다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합원 10분의 1, 대의원 3분의 1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합, 본부, 지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02.04.)

제50조(선출)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1명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을 제외한 부위원장은 개별 출마하며,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제1항의 임원을 제외한 회계감사는 개별 출마하여,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투표방법, 당선자 결정, 보궐선거, 탄핵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1월 1일부터 3년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정기대의원대회로부터 3년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대회로 한다. **(개정 2015.02.11.)(전문개정 2018.02.07.)**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2.07.)**

제52조(보궐선거) ① 위원장의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동반 출마하여 당선된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사퇴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부위원장 중에서 지명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사무처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으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④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여부를 정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⑤ 기타 임원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방법, 당선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21.02.04.)**
⑦ **(삭제 2021.02.04.)**

제52조의2 (비상대책위원회) (신설 2021.02.04.)
① 임원의 전원유고시 또는 직선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촉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 3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장)는 즉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로 한정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경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의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이 발의된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된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③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탄핵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특정본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
2. 대의원 3분의 1 이상
④ 회계감사의 탄핵발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에 의하며 특정 본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의 탄핵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임원의 탄핵 절차, 투표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겸직금지) 조합 임원과 본부장은 겸임할 수 없다. 단, 당연직 부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제5장 조직

제1절 본부

제55조(설치) 조합은 업종, 지역, 기업 등을 감안하여 교섭과 쟁의, 현장 활동 강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업종본부와 지역본부를 구성한다.

제56조(조합과 본부의 관계) ① 본부는 조합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에 대하여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부는 총회, 대의원회 등 주요 회의 기구의 회의 개최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회의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부는 활동상황과 회계에 대하여 조합에 반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는 규약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본부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규정 중에서 조합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2절 업종본부

제57조(설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종본부를 설치한다.

1. 동종업종
2. 공동투쟁과 원활한 사업 집행
3. 조직 발전 가능성
4. 효율적인 연대단위
5. 교섭 효율성

② 업종본부는 관할 조합원 수가 5,000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으며, 한 기업을 단위로 설치할 수는 없다. 단, 업종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조합원 수가 5,0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업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8조(기능) 업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조합 총회 및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사항 가운데 업종본부와 관련된 사업
2. 관련 단위 교섭 책임
3. 조직강화를 위한 사업
4. 해당 업종 관련 정책 사업
5. 그 밖에 업종본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

제59조(운영) ① 조합은 업종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업종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② 업종본부는 조합 규약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업종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60조(기구) 업종본부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규약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제3절 지역본부

제61조(설치) ① 조합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다만 업무 효율을 위해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분할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는 관할 조합원 수가 2,000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달하지 못한 경우 지역위원회를 운영한다. 단, 지역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조

합원 수가 2,0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2조(기능)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다.

1. 지역의 조직, 정치, 연대 활동
2.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밖에 지역본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

제63조(운영) ① 조합은 지역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② 지역본부는 조합 규약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64조(기구) 지역본부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규약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집행위원회

제4절 지부

제65조(설치) 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1개 지부, 지회(분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02.04.)**
② 조합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한다. 단, 중앙위원회는 1사 1지부 원칙을 위한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고, 조건의 미성취시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2.14.)**

1. 교섭효율성
2. 동종업종
3. 지리적 조건
4. 조직 발전 가능성
5. 효율적인 연대 단위

③ 조합은 기업, 지역, 업종,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부를 설치한다.

1. 기업지부
2. 업종지부
3. 지역지부

제65의 2(지부의 합병, 분할 등) (신설 2021.02.04.)

① 지부의 합병·분할은 지부의 특별 결의를 얻어 본부(본부가 없는 경우에는 지부)가 신청하여 중앙위원회가 승인한다.

② 제 65조 제 2항 단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제 1항의 특별 결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조합, 업종본부와 지역본부의 수임 사업
2. 그 밖에 조합 일상 사업

제67조(운영) ① 조합은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부모범운영규정을 제정한다. **(개정 2021.02.04.)**

② 지부는 조합 규약과 규정, 업종·지역본부 운영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 업종·지역본부 운영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의 규약과 규정, 업종·지역본부 운영규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1.02.04.)**

③ 지부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소속 업종·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4.)**

제68조(기구 및 조직) ① 지부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규약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조문명 개정 2015.02.11)

② 지부는 특성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사업장단위의 '지회' 또는 '분회' 설치 시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11.)**

제5절 지회 · 분회(개정 2018.02.07.)

제69조(설치) ① 지부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지회 ·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부는 사업장 지회 · 분회의 구성 즉시 소속 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를 경유하여 본부가 없는 경우에는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02.07.)**

② 지회·분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회 또는 분회의 의결단위에서 정한다.**(전문신설 2018.02.07.)**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70조(권한) ①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을 위임받은 단위는 단체협약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02.07.)**
③ 제2항에 의하여 교섭을 위임받은 단위는 교섭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단체교섭과 체결, 노동쟁의 위임절차 및 방법과 보고, 요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은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는 지부 단위의 합의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다만, 지부는 조합의 승인을 받아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신설 2018.02.07.)**

제71조(체결) ① 조합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대표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하며 대표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72조(쟁의행위)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쟁의조정신청은 조합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하며,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의 경우는 각 교섭단위 집행위원회 등의 결의와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 쟁의행위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즉시 공개하고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또는 전자투표결과를 36개월간 보관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투표관련 자료의 열람은 조합원만이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2.07.)**

제73조(쟁의기금) ① 조합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쟁의기금을 적립한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③ 쟁의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교섭 단위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각 교섭 단위 중앙위원회 또

는 그에 갈음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쟁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5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관할 지부 또는 지회, 분회에서 담당한다. 단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본부,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노조와 합의한 사항
3. 단체교섭에서 다루기로 노사 간 합의한 사항 또는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 7 장 재정

제76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77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공개 회계로 하며 매년도 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위원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조합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④ 조합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78조(기금)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르며 기금의 관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특별부과금) 조합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별부과금의 관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사무처

제80조(사무처)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운영, 인사,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포상과 규율

제81조(포상) ①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의 외부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또는 적절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2조(징계) ① 조합은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 규약과 규정에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3.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5.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부 등이 조합비를 조합으로 인계하면서 실 조합원 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하여 그 미납 합계액이 실조합원 수 기준 조합비 3개월분 이상일 경우 **(신설 2021.02.04.)**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에 대하여 구분하여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 :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기간 중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으로써의 신분은 유지하나 각종의 권리가 정지된다.
3. 제명 :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개정 2021.02.04.)**
④ 1항 5호의 사항 중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조합으로 인계하지 않은 합계액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조합비를 인계하지 않는 지부장 또는 책임있는 간부를 가중 징계한다. **(신설 2021.02.04.)**
⑤ 1항 5호의 사항 중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조합으로 인계하지 않은 합계액이 12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조합은 중앙위원회에 보고 후 조합비를 인계하지 않는 지부, 지부장 또는 책임있는 간부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02.04.)**

제83조(징계의 절차) 징계의 요구, 의결 절차, 재심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3.06, ①, ②항 삭제)**

제 10 장 여성, 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제84조(여성, 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① 조합은 연합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조합 임원(업종본부장 제외), 대의원, 중앙위원, 본부 임원, 본부 대의원, 본부중앙위원 에 대해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부 대의원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여성할당이 될 수 있도록 조합, 본부, 지부는 최대한 노력한다. 단, 동반출마 임원의 경우 4인 중 1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2.03.06.) (개정 2016.02.19.)**
② 조합은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비정규할당제 또는 할증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6.)**
③ 조합은 사회적 소수자 보호, 권익 향상을 위해 할당제 또는 그에 준하는 우대조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의무교육제

제85조(의무교육제)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간부는 조합 또는 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의 교육기관과 그 외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기관 등을 통해 간부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6.02.19.)**

1. 조합 임원
2. 조합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단체협약위원, 사무처 간부
3. 본부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사무처 간부
4. 지부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이상 간부

② 제1항 각 호의 조합 간부들이 이수해야 할 간부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 시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해산

제86조 (해산, 통합, 청산) ① 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②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

의가 있을 시 다른 조직과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조합이 해산할 경우 해산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1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조합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청산을 개시한다.
⑤ 조합의 청산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승계)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단위노동조합들의 권리, 의무, 단체협약(관련 부속문서를 포함한다)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조합으로 승계 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 단위노조 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은 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부 또는 지부운영규정을 정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지부는 조합의 규정, 규칙의 제정에 따라 종전 단위노동조합의 규약(그에 따른 부속규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대의원대회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은 제23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의원은 정대의원과 후보대의원 모두 각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초대 임원 임기에 준한다.

제6조(중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은 제27조 중앙위원 선출과 임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중앙위원의 선출은 규약에 정해진 대로 본조에서 배정하며 임기는 초대 임원 임기에 준한다.

제7조(창립 임원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조합은 제50조 임원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발기인대회에서 발기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조합은 제51조 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조합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조합은 제13조 조합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률제가 실시될 때까지 지부 조합비 금액 결정을 지부에 위임한다.

② 조합은 조합비 납부 방법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내에 정률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선출직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기준) ① 조합은 선출직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종본부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② 업종본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역본부에 직가입한 조직의 경우는 규약의 배정 기준에 의해 조합에서 선거구를 결정한다.

제11조(업종본부 설치 및 초대 업종본부장 선출 경과조치) 규약 57조에도 불구하고 여수신, 생보, 손보, 증권 업종본부는 발기인대회에서 설치한다. 초대 업종본부장은 발기인대회 당일 해당 업종본부 발기인이 선출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업종본부 1차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선출방식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는 조합 초대 임원 임기에 준한다.

제1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규약 39조에도 불구하고 1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차 중앙위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5.02.11.) (개정 2016.02.03.)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7.)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지부인준요청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규약 별지 제1호 서식

지부인준요청서

<table>
<tr><td>지부명</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4">조합원 수</td><td colspan="2">정규직</td><td colspan="2">비정규직</td><td rowspan="4">전체 직원수</td><td colspan="2">정규직</td><td colspan="2">비정규직</td></tr>
<tr><td>전체</td><td></td><td>전체</td><td></td><td>전체</td><td></td><td>전체</td><td></td></tr>
<tr><td>남</td><td></td><td>남</td><td></td><td>남</td><td></td><td>남</td><td></td></tr>
<tr><td>여</td><td></td><td>여</td><td></td><td>여</td><td></td><td>여</td><td></td></tr>
<tr><td>사업장명</td><td colspan="4"></td><td>업종 형태</td><td colspan="4"></td></tr>
<tr><td>사업장 주소</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2">인사팀 연락처</td><td colspan="3">담당자 이름 (직책)</td><td colspan="3">전화번호</td><td colspan="3">팩스번호</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산별노조 가입형태</td><td colspan="3">▢ 조직형태 변경</td><td colspan="6">■ 노동조합 설립일 ( )
■ 규약변경 여부 ( )
■ 노동조합 설립신고 처 ( )</td></tr>
<tr><td colspan="3">▢ 신규 지부 설립</td><td colspan="6">■ 지부 설립일 ( )
■ 지부 설립 시 조합원 수 ( )</td></tr>
<tr><td colspan="10">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규약 제8조, 33조에 의거 지부 인준을 요청 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td></tr>
<tr><td>■ 조합비 안내</td><td colspan="9">우리노조 조합비는 일반조합원 6,500원 / 비정규직, 해고자, 실업자조합원은 4,000원임</td></tr>
<tr><td>■ 산별기금 안내</td><td colspan="9">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20,000원을 조합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조합비 규정 제4조)</td></tr>
</table>

<별지서식 2호> 지회, 분회 인준 보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규약 별지 제2호 서식

□지회·□분회 인준 보고

<table>
<tr><td>지회명
(분회)</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조합원
수</td><td colspan="2">정규직</td><td colspan="2">비정규직</td><td rowspan="4">전체
직원수</td><td colspan="2">정규직</td><td colspan="2">비정규직</td></tr>
<tr><td>전체</td><td></td><td>전체</td><td></td><td>전체</td><td></td><td>전체</td><td></td></tr>
<tr><td>남</td><td></td><td>남</td><td></td><td>남</td><td></td><td>남</td><td></td></tr>
<tr><td>여</td><td></td><td>여</td><td></td><td>여</td><td></td><td>여</td><td></td></tr>
<tr><td>사업장명</td><td colspan="4"></td><td>업종
형태</td><td colspan="4"></td></tr>
<tr><td>사업장
주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2">인사팀
연락처</td><td colspan="3">담당자 이름 (직책)</td><td colspan="3">전화번호</td><td colspan="2">팩스번호</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산별노조
가입형태</td><td colspan="3">▢ 조직형태 변경</td><td colspan="5">■ 노동조합 설립일 ( )
■ 규약변경 여부 ( )
■ 노동조합 설립신고 처 ( )</td></tr>
<tr><td colspan="3">▢ 신규 지부 설립</td><td colspan="5">■ 지부 설립일 ( )
■ 지부 설립 시 조합원 수 ( )</td></tr>
<tr><td colspan="9">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규약 제 69조 1항에 의거 □지회 또는 □ 분회 설립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td></tr>
<tr><td colspan="2">■ 조합비 안내</td><td colspan="7">우리노조 조합비는 일반조합원 6,500원 / 비정규직, 해고자, 실업자조합원은 4,000원임</td></tr>
<tr><td colspan="2">■ 산별기금 안내</td><td colspan="7">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20,000원을 조합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조합비규정 제4조)</td></tr>
</table>

업종본부 운영 규정

2011.12.15. 제정
2012.05.03. 일부개정
2018.01.31. 일부개정
2021.01.28.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0조와 제5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직강화 및 조합의 제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업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00업종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업종본부는 조합과 별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조합의 업종본부는 중앙위원회 결의로 설치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본부는 유사 업종 편재를 원칙으로 하며 관할 조합원 수가 5,000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으며, 한 기업을 단위로 설치할 수는 없다.
2. 단, 업종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조합원 수가 5,0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업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업종본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업종본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산하 지부 임단협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하 지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및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5. 업종본부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
6. 업종본부 단위의 정책 활동
7. 기타 업종본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

제 2 장 조직

제6조(구성) 업종본부는 유사 업종으로 편재된 업종본부 산하의 기업지부에 소속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기업 지부에 속하지 않은 업종 노동자로 구성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업종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업종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업종본부 운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업종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규약, 선언, 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업종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및 업종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업종본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업종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업종본부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업종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업종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업종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

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본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업종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업종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업종본부 단체협약안 체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업종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업종본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업종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업종본부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업종본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 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업종본부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은 업종본부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업종본부 차원에서 적절한 규모로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지부 단위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지부장은

업종본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업종본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업종본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업종본부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업종본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업종본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업종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업종본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업종본부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업종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업종본부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19조(구성) 업종본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업종본부 임원
2. 산하 지부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업종본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업종본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업종본부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2.05.03.)
5. 삭제 (2021.01.28.)

6. 업종본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8. 업종본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업종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설치, 분할, 합병의 신청. 단, 지부의 분할, 합병은 해당 지부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1.28.)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업종본부 집행위원회는 업종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종 업종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업종본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업종본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업종본부 및 지부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업종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업종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단체협약위원회

제25조(구성) ① 업종본부는 업종본부와 산하 지부의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업종본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업종본부장이 임면하고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업종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단체협약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업종본부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업종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

안과 해설안
2. 업종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그 밖에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27조(임원) 업종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01.28.)**
1. 업종본부장
2. 수석 부본부장
3. 부본부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제28조(임무) 업종본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업종본부장
   1) 업종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업종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업종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업종본부 사무국 성원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본부장
   1) 업종본부장을 보좌하며, 업종본부장 유고시 업종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1) 업종본부장을 보좌하며, 업종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업종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업종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종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① 업종본부 임원 중 본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부본부장은 개별 출마하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2.05.03.)**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업종본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1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회계감사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정기대의원대회부터 3년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대회로 한다.**(개정 2018.01.31.)**

제32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업종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업종본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업종본부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업종본부의 단체교섭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업종본부의 단체협약은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업종본부 총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5조(쟁의행위)

1. 쟁의조정 신청은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2. 쟁의행위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업종본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재 정 및 기 타

제36조(재정) 업종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업종본부 부과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 감사)
① 업종본부는 3명 이내의 회계감사를 선출하며 회계감사 선출은 업종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개정 2021.01.28.)**
② 회계 감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선거 관리)
① 업종본부는 대의원 선출, 임원 선출 및 조합원 총회와 관련하여 5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② 선거 관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2조 및 제83조에 의거 처리한다. **(개정 2021.01.28.)**

제 8 장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및 의무교육제

제41조(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업종본부는 조합 규약 제84조에 의거하여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42조(의무교육제) 업종본부는 조합 규약 제85조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업종본부운영규정) 업종본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업종본부운영에 관한 업종본부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업종본부 대의원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운영규정 16조에도 불구하고 업종본부 초대 대의원은 업종본부 설치 이후 1차 중앙위원회에서 배정 기준과 배정 인원을 확정하며 임기는 업종본부 초대 임원 임기에 준한다.

제5조(지부 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은 조합 규약과 제규정, 업종본부운영규정과 제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업종본부규정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업종본부운영규정,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12.05.0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7.)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비 규정

2011.12.15. 제정
2012.03.06.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0.0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3조, 76조에 의거하여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매 회계연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률제가 실시될 때까지 지부 조합비 결정은 지부에 위임한다.
③ 본부·지부는 본부·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외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조(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2조에 따른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산별기금) ① 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2만원으로 하고, 조합 가입(재가입)과 동시에 납부한다. **(개정 2020.07.21.)**
② 실업자, 비정규직, 해고자의 산별기금은 1인당 10,000원으로 한다.**(신설 2020.07.21.)**
③ 납부대상 조합원수는 지부인준시점 기준 조합원수로 한다.**(신설 2020.07.21.)**

제5조(조합비 납부)
① 조합원은 월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하고 해당 본부·지부는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한다.
② 사용자가 조합비를 원천공제하여 조합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각 본부·지부에서 취합하여 조합으로 일괄납부하고 그 세부내역을 보고한다.
③ ②항의 경우 해당 월 조합비는 조합원 월 급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6조(조합비 납부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합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조합비 혹은 조합원 임금의 가압류·압류
2.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3. 폐업, 폐쇄 또는 장기 투쟁으로 조합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4. 대량징계, 해고 등으로 조합비의 정상적 납부가 힘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위 납부유예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조합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해고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조합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신규설립 지부는 조합원으로부터 최초 조합비를 거수한 시점(CMS 최초시행월 또는 급여공제 시행월 등)부터 본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0.07.21.)**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와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3조(정률제 시행) 조합은 3년 이내 정률제 실시를 목표로 하며 본부, 지부는 최대한 협조한다. 이를 위해 중앙위 산하에 조합비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본조 조합비) 규정 2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본조 조합비는 조합원 1인당 월 6,000원으로 한다. 단, 비정규직, 해고자, 실업자는 1인당 월 4,000원으로 한다.

제5조(조합비 자동인상) 삭제 (2016.12.20.)

부 칙 (2012.03.06.)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2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선출직활동비지급 규정

2011.12.15. 제정
2012.05.03. 일부개정
2015.01.28.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1.01.28. 전부개정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중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이 이 규정에 정한 직책의 상근활동을 할 때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조합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선출직활동비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선출직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은 조합 임원(회계감사 제외)에 선출되어 해당 직에서 상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3조(신청)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부 또는 당사자가 조합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금액)
① 제2조에 의해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연간 금액은 선출직 임원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품에서 실제로 받은 금품을 공제한 연도별 차액으로 한다.(개정 2021.12.22.)
② 지급 대상자가 선출되기 전 임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임기 중 임금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사무처 임금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12.22.)
③ 정년(60세) 도과한 경우에는 사무처 성원 급여기준 중 43호봉 기준 기본급+상여금 합계액(직책수당, 근속수당, 통신비, 교통비, 중식대는 제외하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적용)을 활동비로 지급한다.(개정 2021.12.22.)
④ 2,3항에 해당 없는 경우와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앙위원회가 지급대상 기준 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1.12.22.)
⑤ 1, 2, 3, 4 항의 경우 연간 1인 총 지급액은 6,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12.22.)

제5조(재원) 이 규정에 정한 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조합 일반회계에서 마련하며 조

합비 수입 등 조합 재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에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 생계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7조(소속조직의 협조노력) ① 본부·지부 소속 조합원이 위 선출직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본부·지부는 가급적 근로시간면제자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 전임자 혹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며,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평균급여액과 4대 보험료를 전부 혹은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을 위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선출직 임원에 배분하도록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본부·지부 소속 조합원 중 6,500만원 이상의 급여자가 위 선출직 임원에 당선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 한도초과(6,500만원) 금액의 보전을 위하여 선출직 임원을 근로시간면제자로 회사와 합의함으로써 지부에서 불가피하게 임금을 전액 보전 받지 못하는 간부가 발생하는 경우 위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전 받지 못하는 급여해당액을 당해 지부에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금품의 확인)

① 제4조에서 조합이 선출직 활동비로 지급하는 금품은 당해 사업장이나 사무처의 노동규범에 의하여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의미한다(경영성과금은 포함된다).**(개정 2021.12.22.)**

② 조합은 선출임원의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급여지급시 발행한 소득급여명세표 등 각종 급여와 금품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아 금품의 액수를 확인한다.

③ 회계감사는 제2항의 세부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급방식)

① 조합이 선출직 활동비로 지급하는 금품은 12월로 월분하여 매월 지급한다.**(개정 2021.12.22.)**

② 제4조에 따른 금품은 조합이 해당 선출직 임원의 사업장으로 전달하여 회사가 선출직 임원의 임금을 4대보험 및 각종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도록 하거나, 회사의 협조가 안될 경우 해당지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③ 해당 선출직 임원이 소속 지부가 없는 경우 본조가 제4조의 금품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되, 조합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21.12.22.)**

제10조(본부의 지원)
제9조 제3항의 연도별 차액이 6,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종본부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2.)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규정

2012.02.29. 제정
2013.10.23. 일부개정
2016.02.03. 일부개정
2016.08.11. 일부개정
2018.10.31. 일부개정
2021.01.28. 일부개정
2022.01.25. 일부개정
2022.09.01.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0조 및 지부모범운영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의기구와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8.)**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또는 간접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와 각급 대의원, 중앙위원, 업종본부 임원 등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①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직선제의 실시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부이하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지부 등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이 실무를 진행한다. **(신설 2021.01.28.)**
③ 본부가 없는 지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지부 등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이 실무를 진행한다. **(신설 2021.01.28.)**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써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 및 각급 단위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선거 단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1.01.28.)**

제6조(선거일 및 공고)

① 각급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중앙위원회 및 각급 의결기구에서 결정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 및 각급 집행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1.28.)**
② 선거일(투표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본부 임원 선거는 임기 만료 50일 이전에 공고한다.
2. 간접(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선거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개정 2022.09.01.)**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 선거는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신설 2021.01.28.)**
4. 간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과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신설 2021.01.28.)**
5. 조합임원으로 승인받지 않은 본부의 경우, 제3호 및 제 4호를 따르되, 의결기구에서 별도의 선거일, 선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1.28.)**
③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지부선거의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개정 2021.01.28.)**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규약 제39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본부 등을 고려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1.28.)**

제8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업종본부 임원선거에 대하여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개표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 발행
7. 선거홍보물 등록
8. 합동연설회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및 선거결과 보고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기간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제11조(임기와 결원보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를 임기로 한다. **(개정 2021.01.28.)**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관리위원 선출시, 각 본부에서 후보 선거관리위원 1명씩을 추가로 선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해당업종에서 선출된 후보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신설 2021.01.28.)**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다. **(개정 2021.01.28.)**

제2절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업종본부 운영규정 제 39조에 의해 조합 선거지원과 본부 대의원, 임원 선출을 위하여 업종본부 선거관리위원을 5명 이내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4조(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등)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된 업무와 업종본부 대의원 선출, 임원 선출 및 조합원 총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단, 직선제 선거 등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된 업무 중 일부를 지부,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임기와 결원보충)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 종료시까지로 한다. 단, 본부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보궐선출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 단,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절 지부(지회, 분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2021.01.28.)

제15조의2(지부 등의 선거관리위원회) 지부 이하 단위의 선거는 본부의 요청과 지부모범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해 조합 선거지원과 지부 대의원, 임원 선출을 위하여 지부 이하 단위의 선거위원을 3명 이내로 선출할 수 있다.

제15조의3(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5조의4(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등)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된 업무와 지부 대의원 선출, 지부임원 선출 및 조합원 총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의5(임기와 결원보충)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차기 임원 선거 후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로 한다. 단, 지부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지부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출한다.

제4절 선거사무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본부 선거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실무를 진행하되, 이 경우에도 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지부이하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8.)

③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5절 선거인 명부

제17조(선거권)

①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등록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조합비를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비 규정에 따라 경감, 면제 혹은 납부 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1.28.)

제18조(선거권 제한)
①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또는 징계로 인해 권리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1.01.28.)
②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조합 가입 후 30일(선거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9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중앙 또는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직접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8.)
② 지역본부 이하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공고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부의 경우 소속 본부에 보고한다. (신설 2021.01.28.)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 명부 확정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선거인 명부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8.)

제6절 각급 선거관리 및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22조(각급 선거관리 및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대의원대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③ 1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한 유효하다.

④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01.28.)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8.)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23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업종본부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1.01.28.)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와 함께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삭제 (2016.08.11.)
⑤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제24조(입후보자의 공고 및 재등록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른다.

제25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33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③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④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6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1.28.)**
②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선거공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공고형(포스터)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01.)**
②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 공보는 등록마감시간 후 24시간 이내, 자료형 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공고형(포스터)은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자료형은 후보별로 각각 제작한다. **(신설 2021.01.28.)**

제28조(홍보물) ①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와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②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제29조(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의 정책토론회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정책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한다.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또는 정책토론회에서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 및 토론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30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31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본부, 지부, 지회 등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본부, 지부, 지회는 각 후보자들에게 협조해야 한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

제32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01.25.)

제33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③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⑥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⑦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4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 투표는 지부별, 각 지부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②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투표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투표시간은 09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8시로 한다.(2013.10.23. 일부개정)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부재자투표) ①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본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10일전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본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②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함의 확인) 투표소별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 혹은 선거관리위원 이외의 조합원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절차) ①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로 한다. **(개정 2016.8.11.)**
② 기표소투표와 전자투표,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③ 기표소투표는 투표소별 선거관리위원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신설 2016.08.11.)**
④ 전자투표는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한 유권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08.11.)**
⑤ 우편투표는 부재자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6.08.11.)**

제4절 개표

제40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 결과를 보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41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①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④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⑤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42조(투표결과 보고)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43조(당선인 결정) ①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④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입후보자는 재등록할 수 없다.
⑤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4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43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8조 2항 1호, 2호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②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

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5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6조(보궐선거) ① 삭제 (2016.02.03.)
②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본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③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7조(보충선거) ① 조합 임원선거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② 보충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20일을 최소로 한다.
④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⑤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8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3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9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간접선거

제50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임원은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이며,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51조(입후보 절차) ①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회계감사는 선출 대의원대회 10일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선출 대의원대회 20일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한다.

제52조(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 회계감사 및 부위원장 후보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투표절차) ①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4조(투·개표)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55조(당선인결정) 회계감사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자 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수에 1명을 추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하면 다득표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56조(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를 할 경우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의신청) 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33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4 장 대의원 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58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본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30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59조(조합 대의원 등록)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선거구) 조합 대의원 선거 시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부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집행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본부 대의원

제61조(선거일 및 공고) ① 본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30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의결기구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② 본부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62조(본부 대의원 등록) 본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관리

제63조(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본부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64조(후보자등록) ①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등록공고기간 내에 본부 · 지부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본부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제65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③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⑤ 이 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제66조(투표절차) 조합 및 본부,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제67조(개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8조(대의원당선인 결정) ①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③ 중선거구는 대의원선출 인원 수 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정족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정족수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 한다.
④ 중선거구의 당선자 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입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최고득표 순으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선출정원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득표 순으로 미선출 정원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한다.
2.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에 대해 각각 3차 찬반투표를 한다.
3. 소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보자가 2명이면 다득표자에 대해 2차 찬반투표를 한다. 단, 1차에서 동수득표하면 2명에 대해 2차 투표한다.

2) 후보가 3명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포함)를 2차 투표하되, 최고득표자가 복수이면 최고 득표자만 2차 투표한다. 단,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에 대해 3차 찬반 투표하되 3명이상 후보의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복수이면 복수후보에 대해 3차 투표한다.

3) 2명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수득표를 하면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또한, 2호의 복수 후보에 대한 3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제69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본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

제70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3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71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중앙, 본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②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 운영위에서 결정하여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72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조합 및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3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시 등록은 규정 제62조, 제64조, 제66조에 의한다.
②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③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⑤ 보궐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합 대의원은 중앙집행위원회, 본부 대의원은 본부 집행 위원회, 지부 대의원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실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74조(보충선거) ① 조합 및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충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본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③ 보충선거 시 등록은 규정 제62조, 제64조, 제66조에 의한다.
④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⑤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임원의 탄핵

제75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각 호에 의해 탄핵할 수 있다. 단, 특정 본부에서 발의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1. 임원 : 선출단위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 및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2. 회계감사 :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② 임원의 탄핵은 선출단위에서 진행하되, 회의는 규약 제 53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한다.

제76조(탄핵의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의 탄핵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7조(탄핵투표 등) 탄핵투표 및 개표 등에 관해서는 임원선출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 6 장 본부 선거

제78조(본부임원선출) ① 본부장의 선거는 3장을 준용한다.(신설 2018.01.31.)**(개정 2021.01.28.)**
② 업종 본부의 보궐선거 및 간잡선거는 제7절(50조 이하)를 준용한다.(신설 2018.01.31.)

제7장 지부 이하 단위의 선거 (신설 2021.01.28.)

제79조(지부장등 선출) 지부장 등의 선거는 제2장 3,4,5,절 및 제3장을 준용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제26조의 4주는 2주로 하되, 제27~제3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01.28.) (개정 2022.01.25)**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부 칙 (2016.8.1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임원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업종본부 임원 후보 등록 신청서
<별지 제 3호 서식> 조합활동경력 소개서
<별제 제 4호 서식> 후보등록접수증
<별지 제 4호 서식> 선거인 명부
<별지 제 5호 서식>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별지 제 6호 서식> 선거운동원등록서류
<별지 제 7호 서식> 선거운동원 접수증

부 칙(2021. 1.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부 칙(2022.01.2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회의 규정

2012.02.29. 제정
2012.05.03. 일부개정
2015.01.28. 일부개정
2021.01.28. 전부개정
2022.01.25.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의 각 회의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의원칙)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가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원 : 규약 혹은 규정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회의 구성원의 수가 정해진 경우 그 수를 말한다.
2. 재적인원 : 회의 개최일 기준으로 회의 출석 자격을 가진 인원을 말한다.
3. 의사정족수 : 회의의 성립 및 유지에 필요한 인원수로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성립한다.
4. 의결정족수 : 안건의 의결을 만족시키는 인원수로서, 일반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특별정족수는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5. 회기 :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궐위 : 특정 직위의 자격을 보유하는 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유고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회의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여 그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우선동의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 그것을 회순에 예정된 의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동의를 말한다.
9. 번안동의 : 이미 가결된 안건을 다시 의결하기 위하여 하는 동의를 말한다.
10. 수정동의 : 안건 심의 중에 원안의 본래 취지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으로 안건을 수정하는 동의를 말한다.
11. 유회 : 성원미달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회 : 개회 후 의사 정족수의 일시적 미달 및 휴게, 회의장의 질서 유지 곤란 등 회

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3. 속회 : 정회로 중단된 회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회 : 개회 후 의사 정족수의 미달, 회의장의 질서 유지 곤란 등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재소집 : 산회로 중단된 회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시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16. 폐회 : 회의를 끝내고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회의의 소집과 성립

제4조(회의의 소집) ① 규약 혹은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권을 가지며, 해당 회의 재적인원 1/3의 요청으로 소집권자에게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규약 및 규정에서 예정된 소집권자가 모두 유고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재적인원 1/3의 의결로 조합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고, 그 지명받은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소집권자가 복수인 경우 다수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성립)
①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삭제 2022.01.25.)**

제6조 (재적인원 및 출석인원의 산정) ① 회의 출석 자격이 있는 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계없이 재적 인원에 포함된다.
② 제7조에 의한 대리 출석을 제외하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인원에 포함할 수 없다.
③ 아래 각호의 경우는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1. 기권한 경우
2.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제7조(대리 출석) ①선출된 자는 그 지위로 인하여 회의 구성원 자격이 발생하는 회의에 타인을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기구 회의(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 한하여 같은 선출 단위 임원에게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타인을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는 자는 회의일 1일전까지 불참사유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는 대리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의 장

제8조(의장) ①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제9조에 따라 의장이 불신임된 경우는 제1항의 유고로 본다.

제9조(의장불신임 및 임시의장)
① 의장이 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발의 및 2/3 이상에 의한 의결로써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유고, 불신임 등 사유로 제7조에 따른 의장이 없는 경우 해당 회의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시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절차는 출석자 중 임의의 자가 출석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내지 3항에 따른 절차에서 표결은 구두, 거수, 기립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의장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출은 동일 회기의 회의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0조 (의장의 토론 참가 및 제한) ① 집행기구 회의에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장직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의결기구 회의에서 의장이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회피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유고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장의 의무와 권한) ①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 및 개회를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개회 예정 시각에서 30분을 초과해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출석자 의견을 물어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개회 예정 시각에서 60분이 경과하면 유회 선언을 해야 한다.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의장이 출석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회 선언을 유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회 예정 시각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유회 선언을 유예할 수 없다.
4.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5.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6.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7.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개회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속회할 시간을 공지한 후 1회 3시간 및 같은 회기 내에 총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10. 개회 후 회의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정회를 선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11.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정회 후의 속회) 정회된 회의를 속회하기에 앞서 의장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산회 후의 재소집) ① 산회 후 재소집은 그 일시, 장소를 3일 이전에 공고하되, 산회 이전 회의와 연속되는 사항에 대한 공고는 다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산회에 따라 재소집되는 회의에서 안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본래의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산회 후 재소집되는 회의는 산회 전 회의와 동일한 회기로 본다.

제14조(유회 후의 소집) 유회가 선언되면 새로운 회의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총회(대의원대회)는 4주 이내, 중앙위원회는 2주 이내, 중앙집행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소집 공고가 되어야 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15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6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록의 내용) ① 조합 내 모든 회의는 회의 주재자가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서명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8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부, 지부, 지회에 통보하고 자료실에 게시한다.

제1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20조(안건의 제출 및 상정)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하고 상정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 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대회 3일 전까지 중앙위 안건은 1일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5.01.28.)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다만,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동의와 재청 외에 출석자 1/3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대회일 7일 전에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은 즉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4. 중앙위원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중앙위원 3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은 즉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28.)
5.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과 제안 설명을 문서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회의순서) 모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서기 및 감표인원 선출
4. 회순채택
5. 본 안건 심의
6. 기타 안건 심의
7. 폐회

제22조(발언) ① 발언은 의제 범위에 국한하여 간단명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②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제23조(발언의 순서) 의장은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발언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1. 신상에 대한 발언
2. 규칙 발언
3. 의사진행발언

제24조(발언권의 제한)
①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회순채택) 회의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순을 정한다.

제26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27조(동의의 종류) 안건 심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우선동의

제28조(수정동의)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와 재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우선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29조(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동의, 재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 동의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번안동의)
① 이미 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하기 위하여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우선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 재청으로 우선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우선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순변경동의 : 회순채택 후 회순을 바꾸거나, 회순에 없는 새로운 안건을 바로 상정하고자 할 때
2. 의장불신임
3. 임시의장 선출
③ 우선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제32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33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34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5조(표결의 순서)
1.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36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출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표결의 방법) ①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 외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② 제1항 제1호는 의장이 출석자에게 의사를 물어 반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39조(공개 여부) 조합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참관인의 규율)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의장이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질서유지)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자와 배포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절차) 규약과 본 규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의 출석자의 과반수가 회의 수행 및 절차 규정에 대해 결정한다.

부 칙 (2015.01.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1.2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운영 규정

2012.02.29. 제정
2015.01.28. 일부개정
2020.10.20.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1조와 제73조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 중 일정액
2.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부과금
3. 조합원 및 기타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조합 회계규정 제12조에 의한 이월금
6. 조합비 규정 제 4조에 의한 산별기금
7.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쟁의기금 : 쟁의기금은 규약 73조에 의해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을 적립한다.
2. 희생자구제기금 : 희생자구제기금은 규약 11조의 보장을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을 적립한다.
3. 특수목적기금 : 특수목적기금은 규약 78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을 적립한다.
4. 미조직비정규기금 : 미조직비정규기금은 규약 78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을 적립한다.
5. 특별부과금 : 특별부과금은 규약 제 79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을 적립한다.
6. 산별기금 : 산별기금은 조합비 규정 제4조에 의해 적립된 기금을 의미한다.
7. 사무실기금 **(신설 2020.10.20.)**

제 2 장 쟁의기금

제4조(예산) 쟁의기금은 규약 73조에 의해 적립한 기금을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투쟁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2.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투쟁으로 인해 발생된 제 비용
3. 중앙교섭·본부·지부 집단교섭에 대한 지원과 이로 인한 장기파업 지원 비용
4. 기타 사유로 중앙위원회에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

제6조(결산) 쟁의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월 1회 기금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고, 투쟁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희생자구제기금

제7조(예산) 규약 제 11조의 보장을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적립한 기금을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8조(적용대상) 규약 제11조와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기금지급의 심의) 제8조에 따라 기금 적용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희생자구제기금심위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개정 2015.01.28.)**

제10조(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상집간부 1인을 포함해 지부 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임원이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예비 위원을 순번으로 정해 소속 지부에서 기금 지급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부 임원은 성원에서 제외되고 순번에 따라 예비위원이 회의의 성원이 된다.
3.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4. 희생자구제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
5. 회의 성립은 재적 성원 중 조합임원, 상집간부를 제외하고 지부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급의 신청) 제12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부(지회)에 지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와 함

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무) 본 규정에 정한 기금지급 적용의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18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부당노동행위(해고)구제신청(민사 포함)을 해야 한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희생자구제기금심의위원회에 미청구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기금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출근부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 월간 보고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해고, 정직,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으로 출근해야 한다. 단,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본부, 지부, 지회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

제13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회복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5. 지부 또는 지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보상을 받은 자
6. 제 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14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행되어 구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업종료후 연속 지급한다. 다만, 구속·수배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지급대상기간동안 기타의 사유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4. 월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사) 제13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의 대상 및 한도) ①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해고, 계약해지, 구속, 수배 , 기타 불이익 처우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1. 사망시
   1) 장례비의 전액 또는 일부부담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사망당시 월평균급여 2개년분 해당액을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2. 부상 및 질병
   1) 요양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
   2) 위문금
   3) 요양기간 동안 매월 부상 또는 질병 당시의 월평균급여 해당액을 부담
   4) 불구 또는 폐질로 된 자에 대하여는 부상 또는 질병당시의 월평균급여 2개년 해당액의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3. 해고 및 계약해지
   1) 재판비용,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부담
   2) 복직시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피해 당시 월평균 급여 또는 연령으로 환산한 사무처 급여수준 중에서 적은 금액 단,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타 불이익 처우 등
   1) 재판비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부담
   2) 원상회복까지의 기간동안 불이익 보전에 필요한 비용.

② 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임금, 재해보상금, 위로금 등을 받은 희생자가 피해 기간 동안이나 사후에 제 3자로부터 피해와 관련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액을 환급한다. 다만, 조합에 환급하는 금액은 조합이 지급한 해당 구제금액에 한한다.

제17조(기금의 반환)

1.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2조에 따른다.

제18조(지급시기) 이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지급한다. 단, 사유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19조(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 금액 중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공제한다.

제 4 장 특수목적기금

제20조(예산) 규약 제 78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정하여 적립된 기금 중에서 일부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21조(사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따라 대의원대회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집행) 대의원대회에서 총 집행금액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해 집행한다.

제 5 장 미조직비정규 기금

제23조(예산) 규약 제 78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정하여 적립된 기금 중에서 일부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24조(사용)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사용한다.

제25조(집행) 대의원대회에서 총 집행금액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해 집행한다.

제 6 장 특별부과금

제26조(예산) 규약 제 79조에 의해서 특별부과된 징수금을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27조(사용) 규약 제 79조에 의해서 특별부과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집행) 대의원대회에서 총 집행금액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해 집행한다.

제 7 장 산별기금

제29조(예산) 조합비 규정 제 4조에 의해서 조합 가입(재가입)과 동시에 납부된 적립금을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30조(사용)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조합의 장기적 발전 전망과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31조(집행) 대의원대회에서 총 집행금액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해 집행한다.

제8장 사무실기금 (신설 2020.10.20.)

제32조(예산)
규약 제78조 및 본 규정 제3조에 따라 사무실 임차보증금 용도로 적립하는 기금 또는 기존에 보유했던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제33조(사용 및 집행)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민주노총(서울본부 포함) 사무실로 이전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 필요시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해 집행한다. 단, 대규모 증액을 동반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위한 계약금 지급 등 긴급 집행이 필요한 경우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5.01.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0.)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2012.02.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 8조에 따라 조합 가입과 탈퇴 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조합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전결) 지부를 통한 조합 가입 및 자연퇴직(인원정리,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포함)자의 탈퇴에 대한 결정은 지부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지회 소속의 개별조합원은 지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3조(가입절차)
① 소관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조합이나 본부·지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지부나 지회로 이관한다.
② 소관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탈퇴절차)
①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② 개별 가입 조합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조(탈퇴자의 재가입절차)
①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탈퇴했던 이유와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내용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부 및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부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하며 개별 조합원의 재가입은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제6조(조합원 현황보고) 조합원 가입 및 탈퇴자(자연퇴직으로 인한 탈퇴)의 명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합 및 본부로 통보한다.

제7조(조합원 자격 유지) 자연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소속으로 한다.

제8조(조합 가입 거부)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조합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조합가입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조합원 소속변경신청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탈퇴 규정 별지 제 1호 서식 NO._____

조합원 가입신청서

이 름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성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주소				핸 드 폰	
근 무 처		직 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음, 양)			입사년월일	년 월 일
바라는 점					

본인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등에 찬성하고, 규약 및 제 규정·규칙 준수 및 사무금융서비스노동자의 통일단결과 조직확대·강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규약 제7조, 8조에 따라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합 및 상급단체가 조합원 지위 유지기간 동안 선거나 회의, 홍보선전 활동을 위해 본인의 성명, 전자우편, 연락처, 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 . . 성명 (서명)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규정 별지 제 2호 서식 NO._____

조합원 소속 변경 신청서

이 름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성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주소			핸 드 폰		
이전 소속		현재 소속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음, 양)				
바라는 점					

■ 조합비 납부 안내
일반 조합원 : 6,500원 / 비정규직, 해고자, 실업자 조합원 : 4,000원
(납부계좌 기업은행 694-006940-04-015,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본인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등에 찬성하고, 규약 및 제 규정·규칙 준수 및 사무금융서비스노동자의 통일단결과 조직확대·강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규약' 제 8조 및 '조합원가입탈퇴처리규정' 제 7조에 의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합 및 상급단체가 조합원 지위 유지기간 동안 선거나 회의, 홍보선전 활동을 위해 본인의 성명, 전자우편, 연락처, 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 . . 성명 (서명)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무처 업무 및 운영 규정

2012.02.29. 제정
2012.05.03. 일부개정
2017.04.26. 일부개정
2019.01.22. 일부개정
2020.07.21. 일부개정
2022.01.25.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80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사무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책무) 사무처의 전임간부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 조합은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① 부서 설치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하되, 인력과 재정 상태, 조직구조에 따른 원활한 운영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서를 통합 혹은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책기획실
2. 조직실
3. 대외협력실
4. 교육선전실
5. 총무실
6. 미조직비정규실

② 각 실에는 실장(부서장)을 두며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국과 부 편제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5조(각 실, 국의 임무) 각 실, 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실 : 총괄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실간 업무조정, 정세 및 정책연구, 각종 회의자료 준비
2. 조직실 : 조합 사업조직, 조직확대강화 사업, 투쟁사업, 여성, 법규, 문화 사업
3. 대외협력실 : 조합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연대사업과 정치, 통일 사업
4. 교육선전실 : 조합원 교육, 조합 교육체계 구축, 조합 선전, 홍보
5. 총무실 : 인사, 회계, 재정, 총무
6. 미조직비정규실 :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제6조(정원) 사무처 정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며, 사무처장은 정원 범위 내에서 사무처를 운영해야 한다.

제7조(파견) 중앙위원회 승인에 따라 위원장은 사무처 성원을 상급단체 및 산하조직 혹은 연대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과 활동내용을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밀보장) 조합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9조(운영)

1. 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조정 권한과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2.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해당 실장이 관리하며 실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3. 각 실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처장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 업무 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문 서 처 리

제11조(문서의 작성)

1.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실, 국과 관련 있는 사항은 실장 결재가 있은 후 관련 실, 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결재, 시행)

1.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2.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수신과 발신)

1.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실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착 문서는 총무실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실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모든 공문은 총무실이 관리하는 문서 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기록하고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담당 실에서 발송한다.

4.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단, 위임전결 규칙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문서보관)

1.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2.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이후에는 문서목록에 기재한 후 3년간 총무실에서 보관한다.

제16조(문서 보존기간) 문서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2. 조합 총회(대의원대회) 회의자료와 결과 및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3. 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5년
4. 그 밖의 문서 : 3년

제17조(보존문서의 폐기)

1.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2.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간 행 물 및 도 서

제18조(간행물)

1. 조합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2. 기관지의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3.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실에서 발행한다.

제19조(도서 및 신문)

1. 교선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사무실에 보관한다.
2. 각 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교선실에 통보하고 도서대장에 기록한다.
3. 신문의 구독은 총무실에서 국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 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인 사

제20조(임면) 사무처의 전임간부는 규약 제49조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21조(채용)

1. 사무처 성원은 성별, 학력, 국적 등과 그밖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1)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조합 활동 경력과 조합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사무처 성원은 채용심사 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자기소개서
   4) 경력증명서 등 그밖에 인사 상 필요한 서류

제22조(겸직금지) 사무처 성원은 다른 조직(단체)의 상근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민주노총 및 조합의 방침으로 결성되거나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파견) 본부 또는 지부, 지회는 본조와 합의하에 상근자를 본조, 본부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임시 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하며, 처우는 업무 성격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인사) 사무처 정기인사는 매년 3월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9.01.22.)**

제26조(인사원칙)

1.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무처 성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인사에 앞서 사무처장은 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사무처 성원의 인사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등 그밖에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직책부여기준)

1.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은 다음 각 항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국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7년 이상이나 부국장 3년 이상 근무자
   2) 부국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이나 부장 2년 이상 근무자
   3) 부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3년 이상이나 차장 2년 이상 근무자
   4) 차장 : 신규입사자
2. 산하조직 파견자에 대해서도 1호를 준용한다.
3. 실장은 각 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장은 국장 직급자 중 유자격자로 임명하며, 보직을 면할 때에는 국장직급을 유지한다.

제29조(퇴직) 사무처 성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본조 신설 2012.05.03.)**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사무처 성원이 임원에 입후보 할 경우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 7 장 임금

제30조(임금)

1.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소속 조합원의 평균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표준생계비(민주노총)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별표 1> 기준에 의해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개정 2017.04.26.)

3. 호봉승급분 인상 이외의 기본급 인상은 1년에 1회 매해 회계연도 말, 차기 예산 편성 시 책정하되 당해년도 조합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로 결정한다. 단, 조합 재정상황 및 물가인상률 등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사무처 성원의 호봉 승급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단, 중간 입사자의 경우 호봉 승급 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사무처 경조비는 <별표 2>에 의해 지급한다.

제31조(퇴직금)

1.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사무처 성원의 퇴직금은 전체 인원의 년 10%이내에서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익일부터 계산하며 퇴직금 정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근속년수는 인정된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32조(포상)

1.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사무처장이 실, 국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표창한다.
   1) 조합과 노동운동 발전에 공로가 큰 자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3) 그 밖에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2. 포상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2) 유급휴가
3) 표창

제33조(징계)

1. 사무처 성원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거나 조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조합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4) 직무 태만 또는 근무 실태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없이 5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2. 징계 종류는 가음과 같다.
1) 경고 : 징계사유에 대해 문건으로 엄중히 지적하고 경위서를 받음
2) 직위해제 : 해당직위 및 직책에서 해제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3) 감봉 : 급여 일부를 삭감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다.(삭감액은 월급여의 1/10 이내로 함)
4) 정직 : 해당직위에서 해제하고 업무를 정지하며 무급으로 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5) 해고 : 고용 계약을 파기함
3. 사무처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당사자에게 출근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 하며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조합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 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일 경우에는 당사자를 징계 논의에서 제외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별도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징계 의결 전에 해당 성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 효력은 유효하다.

제35조(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 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1.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명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중 한명이 한다.
2. 징계위원회 재심기구는 중앙위원회로 한다.

제37조(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친 징계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 9 장 근 무

제38조(근무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필요시 위원장의 결제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2. 휴게시간 : 오전 12시 ~ 오후1시
3. 공무, 조합 업무로 인해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사무처장이 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무처 성원은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 근무시간이 미달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시간을 조정,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지각, 조퇴, 외출)

1.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출할 경우 실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0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실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수배, 부상 등으로 인한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조합은 이를 보상해야 한다.

제 10 장 출 장

제42조(출장)

1.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품의서를 총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실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출장 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11 장 휴 일, 휴 가 등

제45조(휴일)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법정 공휴일
   3) 임시 공휴일
   4) 그 외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각종 휴일
2. 사무처장은 업무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연월차 유급휴가)

1. 사무처 성원이 1개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1년간 개근한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10일, 9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유가를 준다.
3. 2년 이상 계속 일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4. 연월차 휴가는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2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2회를 사용하였을 때 한 번의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연차 휴가 적용에 있어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6. 연차 휴가 일수가 총 2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일수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연월차휴가 보상금)

1. 사무처 성원이 이 규정 제 45조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2. 퇴직하는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연월차보상금을 정산 지급한다.

제48조(연월차 휴가 보상금 지급기준) 연월차 휴가 보상금은 매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9조(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시기와 기산일) 연월차 휴가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입사일의 당월 급여 지급시로 하며 연월차 휴가 기산일은 입사일로 한다.**(개정 2022.01.25.)**

제50조(휴가)

1.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단,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간은 근무일수로 한다.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 포함) : 2일

3) 직계 존속의 회갑 및 칠순(배우자 포함) : 2일

4) 백숙부모 회갑 및 칠순(배우자 포함) : 1일

5) 배우자의 출산 : 7일

6) 부모(배우자 포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7)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 상(배우자 포함) : 3일

8) 직계존속의 탈상 : 1일

2.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하되 3, 4, 5항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3)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 1일

4) 생일휴가 : 1일(1년 중 자유롭게 사용)**(개정 2022.01.25.)**

5) 특별 휴가 : 6일(사무처 성원의 휴식을 위하여 매해 6일 간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이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기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

3. 각종 휴가는 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모성보호) 사무처 성원 중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성보호를 보장한다.

1. 여성에 대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2.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준다.
3. 태아나 모체의 건강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다.
4.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100일(휴일포함)의 유급보호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6. 배우자의 출산전후로 7일의 유급휴가, 유산시 2일의 유급휴가를 준다.(휴일제외)
7.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30일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8. 4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의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5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
9. 8개월 이상의 조산, 사산의 경우 출산과 동일한 유급휴가를 준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0.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는 1일 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제52조(육아휴직)

1. 만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사무처 성원 중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되, 1년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육아휴직기간 중(산전산후휴가제외)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6개월까지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3. 산전산후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53조(휴직)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휴직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 아래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

1. 요양휴직(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유급,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판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며 이중보상하지 않는다.
2. 요양휴직(업무외 질병 및 사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간병휴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 및 사고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휴직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육아 휴직
5. 교육 휴직 : 국내외 연수 및 학위취득 시 해당 기간

6. 기타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하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제54조(휴직기간의 임금 및 치료비)

1.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단, 업무상 사유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이중보상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에서 지급한다.
3. 업무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추가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그 이후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등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간병휴직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5. 이 조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 혹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5조(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1.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56조(장기근속휴가) 사무처 성원의 전문역량 강화와 휴식을 통한 재충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05.03.)**

1. 6년 이상 계속 근무자가 소정의 휴가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6개월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장기근속휴가는 사무처 총인원의 10%이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연령,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위원장이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3. 장기근속휴가 중의 임금은 기본급 80%와 이를 기준으로 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 12 장 기타

제57조(복리후생) 조합은 사무처 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1. 중식대 : 월 200,000원**(개정 2017.04.26.)(개정 2022.01.25.)**
2. 경조금 : <별표2>에 의해 지급한다.
3. 교통비 : 월 100,000원
4. 귀성비 : 1,000,000원(추석, 설 각 500,000원)**(신설 2019.01.22.)**
5. 건강검진비 : 300,000원(본인 및 배우자,배우자의부모,자녀,부모,형제자매 중1인 추가) **(개정 2019.01.22.) (개정 2020.07.21.)**

6. 피복비 : 200,000원**(신설 2019.01.22.)** 정액 20만원을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07.21.)**

제58조(보험 가입) 조합 임원 및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 재해보험 혹은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9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업종본부 채용간부 승계) 조합 창립일을 기준으로 업종본부 및 지부에 근무한 채용간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고용승계 된 것으로 한다.

제2조(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된 사무처 성원의 경우 퇴직금은 2011년 12월 31일부로 정산하며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 근속년수는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2.05.0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2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1.25.)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처 성원 급여 기준

1. 임금구성 :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각종수당
① 기본급 :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직책수당 :
국장 : 200,000원, 부국장 : 150,000원, 부장 : 125,000원, 차장 : 100,000원
③ 상여금 : 기본급의 600%
④ 근속수당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2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30,000원
- 4년 이상 6년 미만 : 40,000원
- 6년 이상 8년 미만 : 50,000원
- 8년 이상 11년 미만 : 60,000원
- 11년 이상 14년 미만 : 70,000원
- 14년 이상 17년 미만 : 80,000원
- 17년 이상 20년 미만 : 90,000원
- 20년 이상 : 100,000원

④ 연월차수당 :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1.83/183)
* 통상임금 : 기본급, 상여금, 중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모든 지급 금품
⑤ 통신비
- 국장, 부국장(월 50,000원)
- 부장, 차장(월 30,000원)

⑥ 교통비 : 월 100,000원(신설 2019.01.22.)
⑦ 중식대 : 월 150,000원(신설 2019.01.22.)

2. 초임호봉 및 경력 가산
- 초임호봉은 나이를 기준으로 호봉표에 따르되,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 활동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상무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3. 직책산정 기준
- 노동조합, 노동운동 · 시민사회단체 근무 및 해당 유관 업무
- 단 노동조합은 대의원을 포함한 간부활동 경력

<별표 2> 경조사비 지급 기준

구분	사유	금액
결혼	본인	300,000
	자녀	100,000
회갑 및 칠순	부모	100,000
	배우자부모	100,000
사망	본인	1,000,000
	배우자	500,000
	부모	200,000
	배우자부모	200,000
	자녀	200,000
	조부모	100,000
	형제자매	100,000

단체교섭과 쟁의에 관한 규정

2012.02.29.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제70조에 따라 단체교섭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본 규정은 조합이 진행하는 모든 교섭단위의 단체교섭, 임단협 체결, 노동쟁의 등에 적용한다.
② 본 규정 외의 사안은 해당년도 교섭방침에 따른다.

제3조(단체교섭 관리) 본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절차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단체협약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2장 단체협약위원회

제4조(단체협약위원회)
① 조합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을 관리하기 위해 규약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위원회(이하 '단협위')를 둔다.
② 각 본부는 이 규정을 준용한 본부 단체협약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단체협약위원회 구성) 단협위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 1명
2. 본부별 1명
3. 지부 약간명
4. 정책담당, 조직담당, 법규담당 사무처 각 1인
5. 기타 단체협약위원회가 지정하는 약간명

제6조(직무) 단체협약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기본방침·통일요구안 수립

2. 단체협약 요구안·합의안 심의
3. 임단협 교섭 진행경과·합의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해당시기 지침 수립
4. 단체교섭 지도·지원
5. 업종·특성별 단체협약 실태분석 및 모범단협 연구
6. 타 산별노조 임단협 현황 분석
7. 금융서비스·사무직 산별교섭 발전방향 연구
8. 그 밖에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요구안·합의안 심의와 교섭권·체결권 위임

제7조(통일요구안)

① 단협위는 조합원 설문, 현장 토론 등을 거쳐 통일요구안과 방침을 수립한다. 통일요구안의 반영에 대한 세부적 방식은 해당년도 방침에 따른다.
② 산하 모든 교섭단위의 요구안에는 조합의 통일요구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단, 조합 가입 전 진행 중인 교섭의 요구안은 추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조조정, 단협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협위의 사전승인으로 해당년도 통일요구안 반영을 유보할 수 있다.

제8조(포괄위임)

① 위원장은 본부장에게 교섭권과 쟁의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포괄위임의 범위는 해당년도 조합의 임단협 방침내의 요구안·합의안에 한하고 해당년도 임단협 방침에 준수하지 않거나 미달한 요구안·합의안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포괄위임을 받은 본부는 매월 단협위에 참석해 임단협 요구안·합의안 심의, 교섭권·체결권 위임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부에 교섭권과 쟁의조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및 위임)

① 교섭 단위는 단협위의 요구안·합의안 심의를 거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요구안 및 교섭방침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요구안·합의안을 단협위에서 심의한 후 교섭권을 위임한다.
③ 단협위는 요구안·합의안이 심의 기준에 미달할 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유보고)

① 이 규정과 임단협 방침에 위반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단협위는 교섭단위와 지역본부, 본부 등에 사유서 제출과 단협위 출석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단협위는 1항에 따라 규정에 위반된 단체교섭의 경위를 확인한 후 재발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요청) 교섭단위는 사측 개악안 대응, 교섭위원 교육, 자문 등 각종 교섭지원을 단협위, 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상벌규정

2012.02.29. 제정
2012.06.28. 일부개정
2018.01.31. 일부개정
2021.01.28. 일부개정
2022.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9장 제81조(포상), 제82조(징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장 포상

제2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조직의 강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본부·지부·지회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본부·지부·지회나 조합원
3.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3조(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본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본부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부 정기표창은 운영위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 지회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신청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지부별로 년 1명에 대해 지부장의 신청에 따라 조합에서 공로패를 제작,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본부, 지부(회),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단,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조합 산하조직(지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지부 정기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회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회 정기 표창 :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6조(일련번호) 이 규정에 따른 정기표창은 다음과 같이 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1. 조합 정기표창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00(기수) - 01(일련번호)
2. 본부 정기표장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00(기수) - 본부명칭 - 00(일련번호)
3. 지부 정기표창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00(기수) - (본부)지부명칭 - 00(일련번호)
4. 지회 정기표창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00(기수) - 본부 - 지부명칭- 지회명칭 - 00(일련번호)

제7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제2조(포상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서 양식, 기재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징계

제8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82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 규약과 규정에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5.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부 등이 조합비를 조합으로 인계하면서 실조합원 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하고 그 합계액이 실조합원 수 납부액 기준 3개월 이상일 경우 **(개정 2021.01.28.)**
6.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7. 성폭력을 행했을 때

제9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단,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내로 한다) 단, 제8조 5항으

로 인한 정권의 경우 조합비 납부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1.31)

3. 삭제 (2018.01.31.)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10조(징계요청)

① 징계요청은 다음의 사람 또는 기구가 할 수 있다.

1. 사무처장
2. 본부장, 지부장
3. 20명 이상 조합원 혹은 소속 지부 1/10 이상 조합원
4. 소속 단위의 집행위원회
5. 소속 단위 대의원의 2/3 이상

② 징계는 다음 각 호를 적시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여 조합 징계위원회(중앙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징계 피요청자의 인적사항
2. 징계사유
3. 징계사유 근거 자료
4. 징계 의결 요청자 명단

③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성폭력금지와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1.31.)

④ 조합이 파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징계기관) 징계기관은 징계행위 당시 징계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한다. 단, 조합 임원 및 본부, 지부 임원의 징계는 중앙위원회를 1심 기관으로 한다.

1. 조합원 징계는 지부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21.01.28.)

2. 지회 단위 및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 각 항 징계 심의기관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이 문제가 있을시 하급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심의 권한을 갖는다.

제12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 4호(제명)에 대해서는 각 징계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01.31.) (개정 2022.09.01.)

2. 제출 또는 상정된 징계 수준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을 때에는 징계는 유

효하되, 하위 징계수준으로 결정한다.

3. 각 징계 초심 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재심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30일 이내로 1회 연기할 수 있다.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파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징계를 의결하는 회의단위는 징계 안건을 다루는 회의의 성원과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징계심의 요구서, 징계당사자의 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징계절차)

1. 제10조에 의한 징계결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기관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징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지부장, 지회장 또는 조합원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결의시 재심신청권

제15조(통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결의를 요청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심의 3일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징계심의를 거쳐 징계결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징계의결 일시, 장소, 제14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서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징계 요청기관의 의무) 징계 요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징계 기관의 요청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징계 기관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제17조(재심청구)

1. 제10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 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조합은 재심청구서의 접수 사실과 함께 재심의결기관의 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일시와 장소를 확정되지 않았으면 예상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재심의결기관은 재심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징계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계과정에 누락되거나 거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이전 징계결정의 사유와 함께 판단하여 징계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자의 복권)

1. 징계자가 소속한 해당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복권을 결정한다. 단, 정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반이 경과한 후 제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해당지부 운영위원회는 징계자가 선언·강령·규약에 동의하고 징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문을 통해 조합에 요청한다.

제 3장 권리제한 (신설 2021.01.28.)

제19조(권리제한)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제 12조 1호에 따라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한다.**(신설 2021.01.28.)**

1. 각 종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와 의결할 권리
2. 조합의 결정사항 및 활동상황, 회계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3.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2.06.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7.)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폭력·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

2012.02.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강령 및 규약 제8조에 근거하여 조합 내 모든 성폭력 · 폭언 · 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 자율권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 ·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는 언어적 ,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2. 구타, 기물파손 등의 물리적 폭력행위

③ 성폭력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합 남녀간부 및 조합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원칙)

① 성폭력(2차 성폭력 포함), 폭언·폭행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③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임원 중 1인을 책임자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사결과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집위원회 보고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징계 처리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⑤ 상벌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결과를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처리)
피해자나 대리인, 제3자의 성폭력 2차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

제7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노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성폭력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8조(예방)
① 조합은 성폭력·폭언·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전 조직 선출직 임원은 당선 후 3개월 이내 조합에서 인정하는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한다.
③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관련 규정,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9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원 1인을 포함하여 접수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
2. 여성위위원회 위원 1인
3. 상무집행위원 1인
4. 피해자 대리인 1인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질문, 심문, 대질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 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4.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10조(징계)

① 노조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규약 82조(징계)와 상벌규정 8조(징계)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부가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 및 폭언 · 폭행 금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노조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조합원에 공개의무)

①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그 범위와 방법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12조(후속조치)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과 담당

주체를 정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여성·비정규·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2012.02.29. 제정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84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의 '여성 및 비정규·소수자 할당제 및 할증제'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조합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합의 여성관련 사업, 비정규 사업을 책임 있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할당 및 할증 기준) 할당비율은 아래와 같다.
① 임원 : 조합 임원(업종본부장 제외)에 대하여 여성 조합원을 임원 총인원 30%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 대의원 : 선출 단위 별로 여성 조합원을 대의원 총인원 30% 이상 선출한다.
③ 조합 중앙위원 : 선출 단위 별로 여성 조합원을 중앙위원 총인원 30% 이상 선출한다.
④ 본부 임원 : 본부 임원에 대하여 여성 조합원을 본부 임원 총인원 30%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 대의원 : 본부 대의원 선출 시 여성 조합원을 본부 대의원 총인원 30% 이상 선출한다.
⑥ 본부 중앙위원 : 본부 중앙위원 선출 시 여성 조합원을 본부 중앙위원 총인원 30% 이상 선출한다.
⑦ 지부 대의원 : 지부 대의원 선거 시 여성 조합원을 대의원 총인원 30% 이상 선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⑧ 민주노총, 연맹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여성 조합원을 30% 이상 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3조(비정규 할당 및 할증) 조합은 비정규 조합원에 대한 할당 및 할증 시기와 비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안을 마련한다.

제4조(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조합은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할당에 대해 할당시기와 비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안을 마련한다.

정보통신 운영규정

2012.02.29.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사무처에 정보통신 운영자를 둔다.

제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 2 장 이용자

제5조(이용자의 권리)

1.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2. 조합원,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 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이용자 정보 관리)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3.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단, 아래의 항목과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규약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경우
3) 이용자에 대한 통계를 산출할 경우

5.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되어야 한다.
6. 이용자의 IP접속기록은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
7.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8.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3장 게시판 운영

제7조(질문 등에 대한 답변)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용자-운영자(조합)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상담실', '운영자에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의(중복 게시물 처리)

① 중복 게시물은 보관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중복 게시물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9조(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

① 명의 도용 게시물임을 도용당한 자가 증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 게시물은 보관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명의도용 게시물이라 함은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10조(상업적 광고)

① 상업적 광고란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말한다.

② 상업적 광고의 경우 게시물을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광고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통보없이 삭제한다.

제11조(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제12조(성차별적 게시물 등)

① 성차별적인 게시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

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별도 보관 후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동성애자, 장애우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4.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②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나 암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과 적대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말한다.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2.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13조(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2일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경위를 보고한다.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조합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① 중앙소식은 사무처장, 부서 관련 소식/자료는 실(국)장, 지부소식은 지부장의 책임 하에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 4 장 게시판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5인 내외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게시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본조 집행부와 같이 한다

제17조(소집)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② 피해 당사자나 조합/업종/지부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③ 기타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집단회의(채팅)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제18조(운영)
①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수정·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19호(본부·지부 자유게시판) 각 본부·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본부·지부가 자체 관리한다.

제 5 장 이의신청 절차

제20조(이의신청 방법)
①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제22조(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 6 장 자료보관

제23조(자료의 관리)
① 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조직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이용자에게 공개된 자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고 인용, 전제할 수 있다.
③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용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④ 게시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5년간 저장하며 5년이 경과한 자료라도 당해 연도 사업에 필요한 자료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단,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렇지 않다.
⑤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직인 관리규정

2012.02.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의 직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
① 복수의 직인을 제작할 경우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조합의 직인은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보관·관리한다.
③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하여 각 본부에 조합의 직인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직인은 본부장의 책임 하에 보관·관리한다.
④ 조합 직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각 보관·관리 책임자는 분실을 인지한 즉시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조(사용) 직인 사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직인 사용은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합의)의 합의서에 조인할 경우와 조정신청, 교섭을 위한 위임장 발부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외 직인 사용이 불가피할 시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한다.
③ 직인 사용은 사용 2일전 서면 요청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부장의 구두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하되, 사용요청 후 3일 이내에 서면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록) 위원장 직인사용시 조합과 본부는 별도의 직인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제를 득한다.

제5조(위반시) 직인사용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과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직인을 회수하고 당해 본부 집행부 임기기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회 계 규 정

2012.02.29. 제정
2015.01.28. 일부개정
2021.01.28. 전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 38조 및 제77조 '회계규정' 설치 명령, 그리고, 지부운영규정 제 9장 회계감사(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모든 기관(업종, 지부 포함)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부의 경우 지부운영규정 제 39조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란 일반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기금에 관한 회계를 의미한다.
2.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승인 이후 집행한다.
3. 본부의 특별회계는 본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승인 이후 집행한다.
4. 각 지부의 특별징수금은 지부모범운영규정 제 37조에 따라 적립하되, 지부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서 예산 승인 이후 집행한다.

제5조(회계책임)

1.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의 책임아래 총무국이 담당한다.
2. 자산의 처리 및 회계업무 처리 담당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3. 본부는 사무국장의 책임아래 회계담당이 담당한다.

4. 지부는 사무국장 또는 회계 책임자의 책임아래 회계담당이 담당한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 및 각 단위 사무국장 또는 회계책임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년간 보존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결산서, 전표
2. 3년간 보존 : 전표, 일계표, 월계표
3. 회계프로그램의 전표 파일은 휴대용저장장치 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본부에 배정되는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본부 정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부의 예비비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본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의 예비비는 지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1.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1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는다.
3. 위원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4. 본부의 가예산은 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본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정예산의 경우 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본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5. 지부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하는 가예산을 작성하여 지부 집행기구의 결의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집행)

1. 수입 및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의 분류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 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본부의 편성계정 과목표 개정은 본부 집행기구의 의결을 거친다.

3. 지부의 편성계정 과목표 개정은 지부 집행기구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1. 조합의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전용할 수 있다.

2. 본부의 목간 전용은 본부 집행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3. 지부의 목간 전용은 지부 집행위원회, 그리고, 항간의 전용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제12조(지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은 해당단위 특별회계로 적립한다.

제13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급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1.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반기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반기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

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반기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부장은 규약 제 38조 5항에 따라 본조 회계감사위원회에 예결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족금 처리) 1.위원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부장 및 지부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회계감사위원회 또는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각급 의결기간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각 급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 입

제16조(조합비)

1. 조합의 수입은 규약 제13조(조합비)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와 기타 수입로 한다.

2. 본부의 수입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배분비율의 교부금과 본부 특별부과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한다.

3. 지부의 수입은 지부조합원총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와 지부 특별징수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7조(기금과 부과금 등)

1. 기금 및 부과금은 규약 제73조(쟁의기금), 제76조(재정), 제78조(기금), 제79조(특별부과금)에 따른다.

2. 본부의 기금과 부과금은 규약 부칙 제9조(조합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본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3. 지부의 기금과 부과금은 지부운영규정 제 37조 (재정) 및 제 38조 (조합비)에 따라 지부 조합원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기타 수입) 조합비(교부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이자수입(세금환급포함)
3. 배당수입
4. 잡수입 : 조합비(교부금)와 1항, 2항 이외의 수입

제 4 장 회 계 처 리

제19조(집행의 원칙) 조합 및 본부 · 지부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절차)

1.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 및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본부는 사무국장 및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지부는 회계책임자 및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전출납취급)

1. 총무담당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본부의 총무담당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지부의 사무국장 또는 회계책임자는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장부에 기록한다.
2. 총무담당 또는 사무국장등 회계책임자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담당 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조합 또는 지부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각종 기금과 부과금, 적립금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조합비 납부현황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25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전표의 종류)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표는 다음과 같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입전표
2. 지출전표
   1) 지출품의서 : 지출의 사전결의 전표
   2) 영수증 :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전표
   3) 지급증 : 거래의 여건상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전표

제27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발행일자, 적요, 금액은 수정할 수 없다.

제28조(지출증빙)

1.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습 기타 이유로 다음 각호의 경우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1) 경조금 2) 출장비 3) 직무활동비 4)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 6 장 자 산 관 리

제29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시설 등 유형 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년수 5년 이상, 취득가액 3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유동자산 : 현금, 유가증권, 적예금, 미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선급금, 대여금 등

제30조(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경우)의 취득과 처분은 각 급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31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관

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한다

제32조(비품의 구분) 비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 : 내구년수 1년 이상 5년 이하, 구입가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물품
2. 소모품 : 구입단가 50만원 미만이며 내구 년수 1년 미만의 물품(컴퓨터, 팩스기, 복사기, 프린터 등의 부대용품 포함)

제33조(자산 및 비품의 관리)

1. 자산 및 비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양식에 의한 자산 및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비품에 대하여는 회계감사 시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3. 내구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35조에 의하여 폐기품은 폐기한다.
4. 업종본부및 지부의 자산과 비품관리도 이에 준한다.

제34조(비품관리) 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양식에 의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의 폐기처분) 자산 및 비품 폐기처분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자산 : 500만원 미만의 자산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하고 500만원 이상의 자산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본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폐기한다. 지부 이하는 집행(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기구)운영위원회에서 폐기한다.
2. 비품 :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폐기한다. 본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집행기구)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제 7 장 회 계 감 사

제36조(회계감사위원회 구성) 회계감사위원은 각 급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감사) 회계감사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1. 조합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규약에 따라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정기 감사일정과 계획을 조합 사무처장, 본부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3. 본부에 대한 회계감사는 조합 회계감사위원회와 타 본부에서 선출된 회계감사 중 1인,

해당본부 회계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회계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4. 지부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 후 1개월 이내에, 12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정기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 운영위원회 및 조합 회계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8조(지부·지회특별 회계감사)

1. 지부(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2. 지부(지회)특별감사는 지부(지회)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특별감사를 받는 지부(지회)는 회계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

4. 지부(지회)특별감사 결과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 및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후속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보고)

1.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감사 종료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장 및 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조합 및 본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각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2. 삭제

3. 삭제

제40조(감사실시 방법) 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1조(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2조(감사보고서 작성) 각 급 회계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환입 · 변제를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3조(시정요청)

1.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에게 감사결과 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시정 내용을 통지하고 위원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부 및 지부는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적용한다.
2.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의 시정 통보가 없는 경우 회계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는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재 감사 및 이의신청)

1. 위원장 및 본부장은 회계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 재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위원장 및 본부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 후 해결되지 않을 시 각 급 대의원대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1항과 2항은 지부 회계 감사에 준용한다.

제 8 장 계 약

제45조(계약 및 계약서 작성)

1. 각종 인쇄 및 물품, 제조, 구매, 공사 등에 있어 건당 300만원 이상을 발주할 때에는 제47조의 계약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건당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46조(사전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수 없다.

제47조(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지명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 지명하여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입찰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2.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계약 한다.
3. 본부 및 지부는 각 급 집행 기구에서 심의 후 계약할 수 있다.
4. 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미비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28.)

제 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28.)

제 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률원 운영규정

2014.12.0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약 제 15조에 따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상)
① 법률원의 명칭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법률원'(약칭'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 법률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3조(사업) 사무금융노조법률원(이하'법률원'이라 한다)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의 각종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2. 조합원 및 사무금융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3. 노동운동의 발전 및 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인 대안 마련 사업
4. 조합원 및 간부의 법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사업
5. 법률단체 및 법률전문가와의 연대사업
6. 기타 법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위원회) ① 법률원 운영위원회는 법률원장과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법률원장) ① 법률원장은 법률원 구성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법률원장은 법률원을 대표하며, 법률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법규담당자회의) ① 법률원은 법규사업의 활성화와 노동조합의 보호및 안정화를 위해서 법규담당자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법규담당자회의의 구성원은 본부별 균형을 고려하여 법률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원 구성원의 임면) ① 법률원의 구성원은 법률원장이 법률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할 수 있다.
② 법률원의 구성원의 임면사항은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법률원 재정) 법률원은 사건 수임 등으로 생긴 수익금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회계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법률원 운영) 법률원은 법률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재정의 활용, 인원 충원, 법률원 유지를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법률원이 완성될 때까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원 운영규정

2015.01.28. 제정

제1조(명칭과 위상) ① 교육원의 명칭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② 교육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교육원은 주사무소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별도 장소로 할 수 있다.

제3조(목적과 사업) ① 교육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선언과 강령을 실천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② 교육원은 1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의 간부교육훈련 체계 및 의무교육제도 구축 사업
2. 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
3. 노동자 계급의식 정립을 위한 철학, 역사, 경제, 현장 활동 등에 관한 교육 사업
4. 매년 의무교육규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업
5. 국내 노동교육 전문기관 및 외국의 노동교육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
6. 기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원은 조합의 주요 교육현안과 체계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장,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진행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원장과 운영위원) ① 교육원장의 임면은 규약 제15조 ②에 의거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교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육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제6조(부서) ① 교육원에 필요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원에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교육원 재정)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회계부분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과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교육원의 재정이 완성될 때까지 교육국 사업비로 충당한다.

의무교육 운영규정

2015.01.2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의무교육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교과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의무교육 실시) ① 조합은 규약 제85조에 따라 매년 소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당해년도 의무교육 내용 및 일정 등 연간 의무교육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년도 내 추가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합 의무교육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검토·승인토록 한다.

제3조(의무교육 이수의무와 권리제한) ① 노조의 규약 제85조에서 정한 조합·본부·지부 간부들은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 의무교육 전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의무교육의 전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간부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권리제한 및 포상 제외 관련 사항은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의무교육의 내용) ① 의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자의식과 노동조합 정신에 관한 내용
2.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내용
3. 노동조합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에 관한 내용
4.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② 의무교육의 주최 및 주관은 조합이 진행하도록 하며, 조합은 의무교육 시행시 상급단체 및 여타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비용) 조합이 주관하는 의무교육의 기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교육 비용 분담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업종본부 또는 지부가 주관하는 별도의 의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비용을 업종본부 또는 지부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6조(교육장소) ① 조합 교육원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교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조합 의무교육 시행에 필요시 지부는 사업장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7조(의무교육 이수 공고) 의무교육의 이수결과는 반드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의무교육 운영규정 시행세칙

2015.01.28. 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의무교육운영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 의무교육 운영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교과목에 대하여는 매년 조합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다.

대분류	세분류
1. 노동자의식과 노동조합 정신에 관한 내용	1.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의 역사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역사 3. 노조의 선언과 강령에 대한 해설 및 산별노조의 발전방향 4. 노동자 및 노조간부로서의 철학 및 역할에 대한 이해 5. 성 평등교육 6. 자본주의의 분석 및 이해 7. 금융공공성 실현 관련 교육
2.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내용	1. 민주적인 회의진행 원칙과 방법 2. 조합원과 소통하는 법 3. 노동법 해설 4.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3. 노동조합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1. 선전선동교육 2. 단체교섭 실무교육 3. 조직쟁의 실무교육 4. 노조간부 리더쉽 교육 5. 노조간부 문화실무교육
4.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3조(의무교육의 범위) 규약 제85조 및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 대상자별 교과목의 범위는 매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4조(의무교육의 결정과 이행보고) ①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되, 본부 및 지부는 매년 활동보고 및 평가 시에 의무교육 이수 결과를 포함시키고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교육의 주최 및 주관은 조합이 진행하도록 하며, 조합은 의무교육 시행 시 상급단체 및 여타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 운영규정

2016.02.0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5조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금융 · 경제 분야의 공공성 확보와 진보적 관점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금융부문 노동운동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서 한국사회와 노동운동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상) ① 정책연구소의 명칭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② 연구소는 조합의 부설기관으로 하되, 그 설립 형태는 임의단체 또는 사단법인 모두 가능하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금융부문의 공공성 확보 및 진보적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2. 경제 및 금융산업 분석
3. 정부와 자본의 경제 · 금융정책 분석 및 대안 연구
4. 조합 및 외부의 연구과제 수탁
5. 금융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관리
6. 기관지 발간 및 정책자료집 출판
7.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8. 국내외 노동단체 및 유관 연구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
9.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기획국(실)장, 연구소장, 연구실장, 업종본부 추천 조합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1/3이상 소집요구시 운영위원장이 개최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분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정책자문위원회) ① 연구소의 전문성과 사업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금융, 경제, 법률, 노동 분야의 진보적 학자, 연구자 및 실무자와 업종에서 추천받은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연구분과)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1. 금융 · 경제 정책분과 : 정부 및 자본의 금융 · 경제 정책 대응 대안정책 마련 및 정책 모니터링
2. 발전전략분과 : 산별노조 발전전망, 국내외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3. 금융공공성분과 : 금융공공성, 진보적 금융시스템 등
4. 산업경제분과 :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협동조합 등 업종전망, 주요기업 구조조정
5. 노동정책분과 : 노동정책 관련 대안정책 마련 및 정책 모니터링
② 연구소는 필요시 연구분과를 운영위원회 의결로 신설 및 폐지할 수 있으며, 연구분과의 활성화와 현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현장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의 직책은 '상임연구원' 혹은 '비상임연구원'으로 한다.
② '상임연구원'의 채용, 근무, 처우는 조합 사무처 업무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연구원'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제10조(정책기획국(실)과의 관계) 정책기획국(실) 구성원은 해당 연구사업에 결합한다.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예산, 후원금, 연구용역비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초대연구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대연구소장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여수신업종본부 운영 규정

2012.03.29. 본부 제정
2012.05.03.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
2014.03.14. 개정
2021.02.23. 개정 2021.06.29.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6조와 제59조에 의거하여 여수신업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수신업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부는 조합 내 사무실을 두며,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활동) 본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본부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산하 지부 임·단협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하 지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및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5. 본부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
6. 본부 단위의 정책 활동
7. 기타 본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

제 2 장 조직

제5조(구성) 본부는 유사 업종으로 편재된 업종본부 산하의 기업지부에 소속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기업 지부에 속하지 않은 업종 노동자로 구성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본부 운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7조(의무) 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규약, 선언, 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 및 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및 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 및 본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8조(기구) 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중앙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상설,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소집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9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본부 단체협약안 체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또는 지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본부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본부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4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 200명당 1명을 배정하되 지부 단위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200명 미만의 지부는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다.**(단서 신설 2021.02.23.)**

②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대회 전전월까지 1년간의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조합원수를 12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단, 가입 후 1년 미만의 지부는 조합 가입 이후 월별 조합비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해당월수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개정 2021.02.23.)**

③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본부가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제16조(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7조(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본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본부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본부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12. 본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18조(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② 산하 지부장
③ 1항,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업종본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0조(임기) ① 중앙위원의 임기 및 보선은 본부 임원의 경우 본부 임원의 임기 및 선거규정에 준하며, 지부장의 경우는 지부 임기 및 선거규정에 준한다.
② 지부 선출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본부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본부 운영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본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6. 본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8.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9. 본부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11.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종 업종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본부 및 지부의 쟁의에 관한 사항
5. 제반 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단체협약위원회

제25조(구성) ① 본부는 본부와 산하 지부의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본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본부장이 임면하고,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업종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단체협약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안과

해설안 마련
2.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그밖에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②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8조(구성 및 기능) 본부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종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제29조(임원) 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수석 부본부장
3. 부본부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제3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본부 사무국 성원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며 매 6개월마다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부 조합원 10분의 1, 대의원 3분의 1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 지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선출) ① 임원 중 본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2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본부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본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 장 사무

제35조(부서) 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장은 중

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본부장이 임명한다.

1. 정책기획부
2. 선전홍보부
3. 조직쟁의부
4. 교육부
5. 연대사업부
6. 총무부
7. 여성부
8. 문화부
9. 정치부

제36조 (각부의 임무) 각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부 : 본부의 정책, 기획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 선전홍보부 : 본부의 대내외 선전 홍보 및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3. 조직쟁의부 :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교육부 : 본부활동과 관련한 조합원 및 간부교육에 관한 사항
5. 연대사업부 : 노동운동단체 등 다양한 연대사업의 총괄
6. 총무부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7. 여성부 : 여성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8. 문화부 : 본부의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9. 정치부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반사항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7조(단체교섭) 본부 또는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8조(단체협약의 체결) 본부 또는 지부의 단체협약은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또는 지부(지회) 총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9조(쟁의행위)

1. 쟁의조정 신청은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2. 쟁의행위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또는 지부(지회)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40조(재정) 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본부 부과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1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회계 감사)
① 본부는 3명 이내의 회계감사를 선출하며 회계감사 선출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② 회계 감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선거 관리) ① 본부는 임원 선출 및 본부 총회와 관련하여 5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② 선거 관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지부 또는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2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9 장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및 의무교육제

제45조(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84조에 의거하여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46조(의무교육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85조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조합 규약 제30조에 의거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본부 초대 임원 선출 경과조치) 본부운영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본부 초대 임원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기는 조합 초대 임원 임기(2013년 12월 31일까지)에 준한다.

제4조(지부 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은 조합 규약과 제 규정, 본부운영규정과 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본부규정에 위배되는 지부운영규칙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본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부 칙(202106.2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생명보험업종본부 운영 규정

2012.03.28. 본부 제정
2012.05.03.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
2015.04.24.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생명보험업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부는 조합 내 사무실을 두며,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과 별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 제55조와 제59조에 의거하여 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여 생명보험 업종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부는 전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2. 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또는 업종본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산하 지부 임·단협과 노동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4. 산하 지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및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사업
5. 본부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6. 본부 단위의 정책 사업
7. 생명보험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연대 사업
8. 생명보험 산업의 올바른 발전과 경영참여를 위한 사업
9. 기타 본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

제 2 장 조직

제5조(구성) 생명보험업종에 편재된 업종본부 산하의 기업지부에 소속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기업 지부에 속하지 않은 업종 노동자로 구성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업종본부 운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제7조(의무) 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규약, 선언, 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부의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및 업종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본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8조(기구) 업종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본부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거나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9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본부 단체협약안 체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는 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본부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3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4조(임기) ① 본부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 100명당 1명을 배정하며 지부 단위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50명 미만의 지부는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다.
②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대회 전월까지 1년간의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조합원수를 12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단, 가입 후 1년미만의 지부는 조합가입 이후 월별 조합비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해당월수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③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에서 정한바에 의해 선출하여 본부가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제16조(대의원 소환) 본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해당 대의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7조(대의원대회 기능) 본부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본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본부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본부 회계감사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12. 부본부장 및 회계감사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3. 본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4. 본부 총회 소집 결의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18조(구성) 본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회계감사를 제외한 본부임원과 산하 지부장
2. 여성할당제를 고려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추가 선출한 위원

제19조(소집) 회의는 월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0조(기능) 본부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본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본부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본부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본부 운영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6. 본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8. 본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10. 본부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1. 본부운영규칙 재개정에 관한 사항
12. 본부 중앙위원 추가 선출에 관한 사항
13. 지부, 설치, 합병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14.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15. 본부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16. 집행위원회에서 건의한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 본부 집행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산하 지부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3조(기능) 본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본부 및 지부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단체협약위원회

제24조(구성) ① 본부는 본부와 산하 지부의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본부장이 임면하고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단체협약위원회의 사업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본부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안과 해설안 마련
2.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그밖에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구성 및 기능)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②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27조(구성 및 기능) 본부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종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제28조(임원)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수석 부본부장
3. 부본부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제29조(임무) 본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1)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본부 사무국 성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8) 단체협약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권의 임면권을 갖는다.

2. 수석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5. 회계 감사
1) 본부는 3명 이내의 회계감사를 선출하며 회계감사 선출은 본부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2)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 마다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 및 대의원 대회에 보고한다.
3)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4) 회계 감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선출) ① 본부장-사무국장 각 1명은 동반출마하며, 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을 제외한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은 개별 출마하며,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제1항의 임원을 제외한 회계감사는 개별 출마하며,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본조 규정 및 규칙에 따른다.

제31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본부 임원 전원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04.24.)**
② 수석부본부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부본부장 중

에서 지명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사무국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으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④ 부본부장과 회계감사의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여부를 정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⑤ 기타 임원의 보궐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본조 규정 및 규칙에 따른다

제32조(임기) 본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본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 장 사무국

제34조(부서) 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본부장이 임명한다.

1. 정책기획부
2. 선전홍보부
3. 조직쟁의부
4. 교육부
5. 연대사업부
6. 총무부
7. 여성부
8. 문화부
9. 정치부

제35조(각부의 임무) 각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부 : 본부의 정책, 기획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 선전홍보부 : 본부의 대내외 선전 홍보 및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3. 조직쟁의부 :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교육부 : 본부활동과 관련한 조합원 및 간부교육에 관한 사항
5. 연대사업부 : 노동운동단체 등 다양한 연대사업의 총괄
6. 총무부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7. 여성부 : 여성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8. 문화부 : 본부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9. 정치부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반사항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6조(단체교섭) 본부의 단체교섭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7조(단체협약의 체결) 본부의 단체협약은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총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8조(쟁의행위) ① 쟁의조정 신청은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② 쟁의행위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또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39조(재정) 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본부 부과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2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할당제 및 의무교육제

제42조(여성할당제) 본부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해 조합 규약 제84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제43조(소수자할당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84조에 의거하여 비정규직등 할당제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무교육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85조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조합 규약 제30조에 의거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부 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은 조합 규약과 제 규정, 본부운영규정과 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본부규정에 위배되는 지부운영규칙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본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손해보험업종본부 운영규정

2012.02.27. 본부 제정
2012.02.29.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
2015.03.12. 일부개정
2020. 04. 16. 일부개정, 2020.07.21.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
2021. 04. 27. 일부개정, 2021.06.29.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 56 조와 제 59 조에 의거하여 손해보험업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부는 조합 내 사무실을 두며,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활동) 본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본부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개정 2015.03.12.)(개정 2020.04.16.)**
3. 산하 지부 임단협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하 지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및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5. 본부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
6. 본부 단위의 정책 활동
7. 기타 본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

제 2 장 조직

제 5 조(구성) 본부는 손해보험업종에 소속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6 조(권리) 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9 조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본부 운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 7 조(의무) 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규약, 선언, 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 및 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및 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 및 본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8 조(기구) 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중앙위원회 **(신설 2020.04.16.)**
4. 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상설, 특별위원회

제 1 절 총회

제 9 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소집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 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 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0 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 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 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 9 조 2 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본부 단체협약안 체결에 관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 12 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본부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후 30 일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개정 2020.04.16.)**

2) 본부 대의원의 3 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 14 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 15 조(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 200 명당 1 명을 배정하되 지부 단위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대회 전전월까지 1 년간의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조합원수를 12 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단, 가입 후 1 년 미만의 지부는 조합가입 이후 월별 조합비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해당월수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개정 2015.03.12.)**

③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본부가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제 16 조(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 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 17 조(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삭제 **(개정 2020.04.16.)**
3.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5.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 2015.03.12.)**
6. 본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본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8. 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9. 본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본부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2. 본부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13. 삭제 **(개정 2020.04.16.)**
14. 본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중앙위원회 (삭제 2015.03.12.)(신설 2020.04.16.)

제 18 조(구성) 중앙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부장과 상근간부로 구성한다. 단, 상근간부는 1000 시간 이상의 타임오프를 인정받은 간부에 한한다.**(개정 2021.04.27.)**

제 19 조(소집) 회의는 분기별 1 회 이상으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 20 조(임기) 중앙위원의 임기 및 보선은 본부 임원의 경우 본부 임원의 임기 및 선거규정에 준하며, 지부 상근 간부의 경우는 지부 임기 및 선거규정에 준한다.

제 21 조(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본부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본부 운영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본부의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6. 본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8.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9. 본부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 22 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 지부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2.)**

제 23 조(소집) 회의는 월 2 회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제 24 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4.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본부 및 지부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단체협약위원회

제 25 조(구성) ① 본부는 본부와 산하 지부의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본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본부장이 임면하고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본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③ 단체협약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6 조(기능)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안과 해설안 마련
2.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그밖에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7 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②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5 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③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 7 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 28 조(구성 및 기능) 본부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종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제 29 조(임원) 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수석부본부장
3. 부본부장 3 인 이내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제 30 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본부 사무국 성원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며 매 6 개월마다 그 결과를 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2) 본부 조합원 10 분의 1, 대의원 3 분의 1 또는 중앙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 지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제 31 조(선출) ① 임원 중 본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본부장은 개별출마하고, 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개별출마 부본부장 중 최다득표자를 수석부본부장으로 한다.
③ 기타 임원선출에 관하여 투표방법, 당선자 결정, 보궐선거, 탄핵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규정을 따른다.

제 32 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본부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 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 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 33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제 34 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본부 조합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 장 사무

제 35 조(부서) 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장은 중앙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본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1. 정책기획부
2. 선전홍보부
3. 조직쟁의부
4. 교육부
5. 연대사업부
6. 총무부
7. 여성부
8. 문화부
9. 정치부

제 36 조(각부의 임무) 각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부 : 본부의 정책, 기획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 선전홍보부 : 본부의 대내외 선전 홍보 및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3. 조직쟁의부 :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교육부 : 본부활동과 관련한 조합원 및 간부교육에 관한 사항
5. 연대사업부 : 노동운동단체 등 다양한 연대사업의 총괄
6. 총무부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7. 여성부 : 여성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8. 문화부 : 본부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9. 정치부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반사항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37 조(단체교섭) 본부 또는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38 조(단체협약의 체결) 본부 또는 지부의 단체협약은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또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 39 조(쟁의행위) ① 쟁의조정 신청은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② 쟁의행위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또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 40 조(재정) 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본부 부과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 41 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2 조(회계 감사) ① 본부는 3 명 이내의 회계감사를 선출하며 회계감사 선출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② 회계 감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43 조(선거 관리) ① 본부는 임원 선출 및 본부 총회와 관련하여 5 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5.03.12.) (개정 2020.04.16.)**
② 선거 관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44 조(징계) 지부 또는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 82 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9 장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및 의무교육제

제 45 조(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 84 조에 의거하여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 46 조(의무교육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 85 조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부 칙

제 1 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시행) 이 규정은 조합 규약 제 30 조에 의거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본부 초대 대의원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본부운영규정 제 15 조에도 불구하고 본부 초대 대의원은 업종본부 설치 이후 (구)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규약 제 28 조(대의원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업종본부 초대 임원 임기에 준한다.

제 4 조(본부 초대 임원 선출 경과조치) 본부운영규정 제 31 조에도 불구하고 본부 초대 임원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기는 조합 초대 임원 임기(2013 년 12 월 31 일까지)에 준한다.

제 5 조(지부 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은 조합 규약과 제 규정, 본부운영규정과 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본부규정에 위배되는 지부운영규칙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본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부 칙(202106.2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손해보험업종본부 특별기금 운용규칙

2015.03.12. 본부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이하 본부) 운영규정 부칙 제 5 조(지부 운영규칙)에 의거 본부의 투쟁을 비롯한 특별히 필요한 목적을 위한 특별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조성) 특별기금은 본부 조합원 1 인당 매월 500 원의 기금으로 조성한다.

제 3 조(기금의 용도) 특별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본부 및 소속 지부의 투쟁
2. 본부 무급전임간부의 임금
3. 기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 4 조(집행) 특별기금의 집행은 본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5 조(기금의 예치) 특별기금은 은행에 별도 계좌로 예치한다.

제 6 조(유지) 특별기금의 유지여부는 매년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조합 규약, 조합 회계규정, 본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금의 적립과 운용은 본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 10 조(시행) 이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칙 제 4 조(집행)에도 불구하고 2015 년 2 월부터 12 월까지 조합원 1 인당 5,500 원분의 특별기금은 민주노총 총파업기금으로 집행한다.

증권업종본부 운영 규정

2012.03.22. 본부 제정
2012.05.03.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
2018.2.22.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6조[1]와 제59조[2]에 의거하여 증권업종본부(이하 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부는 조합과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활동) 본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본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본조가 위임하는 통일임단협 교섭 및 산하 지부 임단협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지도
4. 산하 지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및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5. 본부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
6. 본부 단위의 정책 활동
7. 기타 본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

제 2 장 조직

제5조(구성) 본부는 본조에서 본부로 편재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1) 제56조(조합과 본부의 관계) ⑤ 본부는 규약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본부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규정 중에서 조합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2) 제59조(운영) ① 조합은 업종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업종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② 업종본부는 조합 규약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업종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3]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본부 운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7조(의무) 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규약, 선언, 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 및 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및 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 및 본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8조(기구) 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삭제(2018.2.22.)**
4. 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상설,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소집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제9조(권리) 조합의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소홀히 할 수 없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와 의결할 권리
3.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참여하고 조합 활동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
4.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결정사항 및 활동상황, 회계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기타 규약에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9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본부 단체협약안 체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본부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본부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가. 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나. 본부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다.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4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대의원의 배정 기준)

1. 대의원은 각 지부(지회)단위로 1인을 기본으로 하며, 단수적용 없이 지부 조합원 수 300명 당 1명씩을 선출한다.

1) 300명 미만 : 1명

2) 300명 이상 ~ 600명 이하 : 2명

3) 600명 이상 ~ 900명 이하 : 3명

(전문개정 2018.2.22.)

2.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전문개정 2018.2.22.)**

3. 각 지부 또는 지회는 전항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을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전문신설 2018.2.22.)**

제16조(대의원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7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본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본부 기금 및 자산의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본부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12. 본부 회계감사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삭제(2018.2.22.)

제18조(선출과 구성) 삭제(2018.2.22.)

제19조(소집) 삭제(2018.2.22.)

제20조(임기) 삭제(2018.2.22.)

제21조(기능) 삭제(2018.2.22.)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부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전면개정 2018.2.22.)**

1. 본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3. 본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본부 운영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5. 본부 단체협약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6. 본부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7. 본부 기금 및 자산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본부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10.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12. 본부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13.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14.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15. 본부 및 지부의 쟁의에 관한 사항
16. 제반 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7.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18. 기타 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단체협약위원회

제25조(구성) ① 본부는 본부와 산하 지부의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본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본부장이 임면하고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본부장이 임면한다.**(일부개정 2018.**

2.22.)
③ 단체협약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안과 해설안 마련
2.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그밖에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②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일부개정 2018.2.22.)**
③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8조(구성 및 기능) 본부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종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제29조(임원) 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수석 부본부장
3. 부본부장 3인 이내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3인 이내

제3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본부 사무국 성원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며 매 6개월마다 그 결과를 본부 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2.22.)**
2) 본부 조합원 10분의 1, 대의원 3분의 1 또는 본부 집행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 지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2.22.)**

제31조(선출) ① 임원 중 본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2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본부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본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일부개정 2018.2.22.)**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본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 장 사무

제35조(부서) 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장은 본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본부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8.2.22.)**

1. 정책기획부
2. 교육선전부
3. 조직쟁의부
4. 총무부
5. 여성부
6. 대외협력부

제36조(각부의 임무) 각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부 : 본부의 정책, 기획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 교육선전부 : 본부의 대내외 선전 홍보 및 기관지 발행, 조합원 및 간부교육에 관한 사항
3. 조직쟁의부 :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총무부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5.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관련된 사항
6. 대외협력부 : 노동운동단체 등 다양한 연대사업의 총괄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7조(단체교섭) 본부 또는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8조(단체협약의 체결) 본부의 단체협약은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총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9조(쟁의행위)

1. 쟁의조정 신청은 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일부개정 2018.2.22.)**
2. 쟁의행위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또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40조(재정) 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본부 부과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 각종 기금으로 한다.

제41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회계 감사) ① 본부는 3명 이내의 회계감사를 선출하며 회계감사 선출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② 회계 감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선거 관리) ① 본부는 임원 선출 및 본부 총회와 관련하여 5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본부 집행위원회에서 한다. **(일부개정 2018.2. 22.)**
② 선거 관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지부 또는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2조[4]에 의거 처리한다.

제 9 장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및 의무교육제

제45조(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84조[5]에 의거하여 여성·비정규

---

4) 제82조(징계) ① 조합은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 규약과 규정에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3.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에 대하여 구분하여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기간 중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으로써의 신분은 유지하나 각종의 권리가 정지된다.
3. 제명: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제84조(여성, 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① 조합은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조합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 본부 임원, 본부 대의원, 지부 대의원에 대해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

등 소수자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46조(의무교육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85조[6]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동반출마 임원의 경우 4인 중 1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비정규할당제 또는 할증제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사회적 소수자 보호, 권익 향상을 위해 할당제 또는 그에 준하는 우대조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 제85조(의무교육제)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간부는 조합 또는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의 교육기관과 그 외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기관 등을 통해 간부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 조합 임원
2. 조합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단체협약위원, 사무처 간부
3. 본부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사무처 간부
4. 지부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이상 간부

② 제1항 각 호의 조합 간부들이 이수해야 할 간부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 시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역본부 운영규정

2014.09.30. 제정
2014.09.30.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6조와 제63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직강화 및 조합의 제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000지역본부라 하고, 약칭은 사무금융노조 000지역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역본부 사무소는 지역본부 관할 000에 둔다.

제4조(활동) 지역본부는 다음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산하 지부 및 조합원의 임단협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하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및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5. 지역 내 사무금융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
6. 지역본부 단위의 정책 활동
7. 지역 내 민주노총 사업 결합 및 정치, 연대 활동
8. 기타 지역본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지부, 지회, 분회)

1. 본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부, 지회, 분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분회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부·지회·분회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지부·지회·분회의 운영규정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역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역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역본부 운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역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규약, 선언, 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및 지역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지역본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역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6.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역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역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

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9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역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역본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1. 본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대의원은 지회 및 분회당 1명을 기본 배정하고, 조합원 50명당 1명씩 추가배정 한다. 2개 이상 광역단위로 편재된 경우 1개의 광역단위로 해석한다.

3.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대회 전월까지 1년간의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조합원수를 12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단, 가입 후 1년 미만의 지부는 조합가입 이후 월별 조합비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해당월수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4. 각 지역조직에서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각 지역조직에서 정한 바에 의해 선출하여 본부가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역본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역본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지역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지역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8.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9.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지역본부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지역본부임원
2. 지부, 지회, 분회 대표

제20조(소집) 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지역본부 운영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6.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지역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9. 상설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 임원,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외),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본부 및 지부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단체협약위원회

제25조(구성)
1.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와 소속 조합원의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2 지역본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지역본부장이 임면하고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역본부장이 임면한다.

3. 단체협약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지역본부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역본부 및 소속 조합원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안과 해설안
2. 지역본부 및 소속 조합원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그밖에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7조(구성 및 기능) 본부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종의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임 원

제28조(임원) 지역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수석 부본부장
3. 부본부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제29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본부 사무국 성원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역본부장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년 2회 이상 또는 본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 전원의 결의가 있을 때 본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본조에 15일 이내에 보고 한다.

제30조(선출)

1,임원 중 본부장, 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본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출은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개별출마 부본부장 중 최다 득표자가 수석부본부장이 된다.

3. 임원선출에 대한 기타사항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임원의 보궐선거)

1. 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지역본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지역본부의 단체교섭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한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 단체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역본부의 단체협약은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지역본부 총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6조(쟁의행위)

1. 쟁의조정 신청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2. 쟁의행위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지역본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재 정 및 기 타

제37조(재정) 지역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역본부 부과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8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회계 감사)

1. 지역본부는 3명 이내의 회계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 선출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2. 회계 감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선거 관리)

1. 지역본부는 대의원 선출, 임원 선출 및 조합원 총회와 관련하여 5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2. 선거 관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2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8장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및 의무교육제

제42조(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조합 규약 제84조에 따른다.

제43조(의무교육제) 조합 규약 제85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운영규정 30조(선출) 및 32조(임기)에도 불구하고 본부 초대 임원은 지역본부 결성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이 규정 제정일 현재 조합 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4조(지부, 지회, 분회 운영규칙) 지부, 지회, 분회 운영규칙은 조합 규약과 제 규정, 지역본부 운영규정과 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 지회, 분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역본부규정에 위배되는 지부, 지회, 분회 운영규칙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역본부 운영규정, 지회 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공공금융업종본부 운영 규정

2017.02.01.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6조와 제59조에 의거하여 공공금융업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금융업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부는 조합 내 사무실을 두며,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활동) 본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본부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산하 지부 임·단협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하 지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및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5. 본부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
6. 본부 단위의 정책 활동
7. 기타 본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

제 2 장 조직

제5조(구성) 본부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와 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통제, 인사권, 주요업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

며, 규약과 본부 운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7조(의무) 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규약, 선언, 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 및 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및 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 및 본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8조(기구) 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중앙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상설,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소집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9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본부 단체협약안 체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또는 지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본부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본부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4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 200명당 1명을 배정하되 지부 단위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대회 전전월까지 2년간의 월별 조합비 납부 누계조합원수를 24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단, 가입 후 2년 미만의 지부는 조합 가입 이후 월별 조합비납부 누계 조합원수를 해당월수로 나눈 평균조합원수로 한다.
③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본부가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제16조(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7조(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본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본부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본부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12. 본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18조(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② 산하 지부장
③ 1항,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업종본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0조(임기) ① 중앙위원의 임기 및 보선은 본부 임원의 경우 본부 임원의 임기 및 선거규정에 준하며, 지부장의 경우는 지부 임기 및 선거규정에 준한다.
② 지부 선출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본부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본부 운영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본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6. 본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8.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9. 본부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11.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종 업종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본부 및 지부의 쟁의에 관한 사항
5. 제반 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단체협약위원회

제25조(구성) ① 본부는 본부와 산하 지부의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본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본부장이 임면하고,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업종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단체협약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안과 해설안 마련
2. 본부 및 산하 지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그밖에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②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8조(구성 및 기능) 본부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종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제29조(임원) 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수석 부본부장
3. 부본부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제3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본부 사무국 성원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며 매 6개월마다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부 조합원 10분의 1, 대의원 3분의 1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 지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선출) ① 임원 중 본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2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본부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본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본부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 장 사무

제35조(부서) 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본부장이 임명한다.

1. 정책기획부
2. 선전홍보부
3. 조직쟁의부

4. 교육부
5. 연대사업부
6. 총무부
7. 여성부
8. 문화부
9. 정치부

제36조 (각부의 임무) 각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부 : 본부의 정책, 기획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 선전홍보부 : 본부의 대내외 선전 홍보 및 기관지 발행에 관한 사항
3. 조직쟁의부 :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교육부 : 본부활동과 관련한 조합원 및 간부교육에 관한 사항
5. 연대사업부 : 노동운동단체 등 다양한 연대사업의 총괄
6. 총무부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7. 여성부 : 여성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8. 문화부 : 본부의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9. 정치부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반사항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7조(단체교섭) 본부 또는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8조(단체협약의 체결) 본부 또는 지부의 단체협약은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또는 지부(지회) 총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9조(쟁의행위)

1. 쟁의조정 신청은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2. 쟁의행위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본부 또는 지부(지회)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40조(재정) 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본부 부과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1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회계 감사)
① 본부는 3명 이내의 회계감사를 선출하며 회계감사 선출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② 회계 감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선거 관리) ① 본부는 임원 선출 및 본부 총회와 관련하여 5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본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② 선거 관리에 관해 규약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지부 또는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2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9 장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및 의무교육제

제45조(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84조에 의거하여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46조(의무교육제) 본부는 조합 규약 제85조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조합 규약 제30조에 의거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본부 초대 임원 선출 경과조치) 본부운영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본부 초대 임원은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기는 조합 임원 임기(2019년 12월 31일까지)에 준한다.

제4조(지부 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은 조합 규약과 제 규정, 본부운영규정과 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본부규정에 위배되는 지부운영규칙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본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지부모범운영규정

2021. 1. 28.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6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의 명칭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지부의 사무소는 업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둘 수 있다.
②사업장 단위 사무소는 ** 본사내에 두도록 한다.

제4조(설치) 지부는 조합 규약에 의해 심의, 의결되었을 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며, 자주적인 단결로써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사업을 진행한다.

제6조(규약과 모범운영규정, 기타 규정 및 규칙과의 관계) ① 조합 규약에 반하는 본 규정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③ 본 규정은 지부 운영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① 지부는 업종단위와 기업단위의 지부 관할에 속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② 기업 단위에서 Union Shop을 합의한 경우 신규입사자는 조합원이 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규약 제 9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9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규약 제10조와 같다.

제10조(신분보장 및 구제) 지부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신분, 신체 또는 재산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조합원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1조(기관) 지부에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지부조합원총회
2. 지부대의원대회
3. 지부운영위원회
4. 지부집행위원회
5. 분회총회(지회총회)
6. 지부회계감사(위원회)
7.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지부조합원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① 지부 조합원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 조합원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1. 규약과 규정, 규칙에 의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경우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운영위원회 의결로 소집을 결정한 경우
4. 지부 조합원 10 분의 1 이상 또는 지부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부의할 안건과 내용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3조(지부조합원총회의 기능) ① 지부조합원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제67조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부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지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찬반투표
5. 지부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부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지부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지부 합병,분할 동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합병, 분할은 규약에 따라 업종본부의 신청과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지부는 지부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제 1항 제 2호 중 제 33조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기로 한 임원과 제 4호, 제 8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중 처분, 제8호의 경우에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1항 제 4호의 결의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⑤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집공고 등) ① 지부장은 지부조합원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단, 12조 3항 3,4호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총회 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집 요청자 대표가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공고할 수 있다.

② 1항을 변경 공고하는 경우는 최소 2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되, 부의사항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3일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부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총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지부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①지부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부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지부대의원소집은 12조 2항, 3항에 의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대의원대회를 (대의원 투표방식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지부대의원 배정 기준) ① 기업지부의 지부대의원 배정은 (2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되,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선출단위를 결정한다.

② 업종지부의 지부대의원 배정은 지회장 또는 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지회 또는 분회

조합원 수 (　　)당 1명을 지부대의원으로 배정한다. 단, 선출단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선출방법 및 자격) ①기업지부의 대의원 배정 및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 지부 대의원은 매년 각 분회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분회 확정 및 지부대의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지부대의원 자격은 입사 1년 이상된 조합원으로 한다.
4. 분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업종지부의 대의원배정 및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지부 대의원은 매년 각 지회 또는 분회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지회, 분회장은 대의원을 겸한다.

③ 각 지부는 대의원 선출 시 정대의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후보 대의원을 선출한다. 단, 필요시 각 분회별로 후보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지부대의원의 임기)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위한 지부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결원된 지부대의원은 1개월 이내로 선출하며 결원 잔여기간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9조(대의원 소환) ①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② 소환 발의를 받은 대의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③ 지부장은 발의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단,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④ 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조합원 의견 청취, 활동보고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이 불참 사유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부대의원대회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그 권한이 정지된다.

제7장　지부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할 수 있다.

1. 지부장

2. 분회장(지회장)
3. 1,2 호 외에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시 지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조합원총회, 지부대의원대회 부의안건 결정
2. 지부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3. 지부 추경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6. 지부분회, 대의원 선출단위 확정
7. 지부운영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단, 지부운영규정에 관한 해석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8. 조합원 징계의 1심 결정
9. 예산의 항간 전용
10. 기타 지부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8장 지부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① 지부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과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②.지부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조합원총회(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부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결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분회총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에 관한사항
5. 예산의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9장 회계감사(위원회)

제24조(구성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지부 회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산의 잔고 확인
3. 자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의 취득,보관, 관리 및 처분
4. 제 증빙서 및 지출결의서의 점검
5. 기타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25조(권한 및 책임)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답변이 불비하다고 판단 된 때에는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서의 작성 제출)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고, 지부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 보고서는 회계감사위원회 전원의 서명으로 작성하되, 지부장등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7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운영위원회 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위촉한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여타 선거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11 장 분회 (지회) 총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① 기업지부의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1. 분회는 조합원 (40)명당 1개의 분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분회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분회총회는 분회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3. 분회총회는 분회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진행하되, 월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다발분회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한다.
4. 분회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지부장 또는 분회장이 요구할 때 임시 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업종지부의 지회 또는 분회는 사업장단위로 구성 및 운영한다.

제29조(분회장 및 지회장의 역할 및 선출)
① 분회장 및 지회장의 역할

1. 분회및지회를 대표하며 분회및지회의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분회총회 및 지회총회의 결정사항을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2. 분회및지회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분회및지회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기타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4. 분회및지회장은 필요시 부분회장 또는 부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회총회 또는 지회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분회장 및 지회장의 선출

분회장 또는 지회장은 분회총회 또는 지회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분회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임기를 정할 수 있다.

④ 보궐선거로 선출된 분회장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기능) 분회(지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심의한다.

1. 지부대의원 및 분회 또는 지회장의 선출
2. 지부대의원대회 및 지부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안건 심의
3. 분회(지회)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요망사항
4. 기타 분회(지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장 임원

제31조(임원) 지부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3. 부지부장 약간명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 위원 (00)명

제3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부장
   1) 지부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부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지부의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부 각부, 국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또는 지부장을 대리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지부장이 지부장을 대리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 전까지는 지부장이 지명한 부지부장이 대리한다.

4.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지부의 재산과 조합비 및 경비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적어도 6개월마다 1회씩 회계감사하여 지부의 운영위원회 및 지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3) 회계감사는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33조(선출) ①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소 2인 이상은 런닝메이트로 출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선출되지 않은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장 부서 등

제35조(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4장 단체교섭

제36조(단체교섭 등)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체결하고, 지부장은 조합의 위임에 따라 실무교섭을 조합을 대표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5장 재정

제37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부조합비와 특별징수금, 기타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8조(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임금 수령액중 조합비를 포함하여 총임금의(1)%를 지부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연도 및 결산보고) ① 지부의 회계연도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지부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총회나 지부대의원회에서 보고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지부의 회계는 공개하여야 하며, 지부회계의 일체에 관한 현황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규약 제 38조 제 5항에 따라 예결산자료와 회계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조합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 및 집행 등) 예산의 편성, 집행방법, 회계처리 방법 등은 모두 조합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41조(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권) 지부장은 조합원이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장 표창 및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42조(표창) 지부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지부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제43조(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참석(투표)과 참석(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③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본조 규약 제 53조를 준용한다.

제44조(징계 등) 징계절차 등은 조합 상벌규정에 따른다. 단, 징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기관은 조합 중앙위원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로 한다.

제 17장 비상시 지부업무의 처리

제45조(비상시 직무집행권자의 선임) ① 임원의 임기만료 후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각종 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② 위원장은 지부의 운영을 위해 직전 지부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집행권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지부에서 직무집행권자 선출이 어렵거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또는 업종본부 의결기구의 결정으로 직무집행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직무집행권자는 선출 즉시 본부 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사무를 진행하여

조직안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8장 여성, 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제46조(여성, 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지부는 임원, 대의원에 대해 '규약' 제 84조 및 '여성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제 4조에 따라 30% 이상의 여성할당제 및 비정규 할증제를 실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19장 해산

제47조(지부의 해산) 지부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청산) 제47조의 경우 조합 중앙위원회는 청산사무 처리방법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우분투비정규센터 운영 규정

2021. 1.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 15조에 따라 설치된 '비정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상)

① 비정규센터의 명칭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분투비정규센터(약칭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센터')로 한다.

② 비정규센터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3조(사업)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센터(이하 '비정규센터')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 및 조직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미조직 ·비정규 대상 노동상담
2. 노동조합 조직활동 지원
3. 미조직 ·비정규 대상 각종 법적 분쟁 지원
4.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

제4조(운영협의회)

① 비정규센터는 센터의 운영방향 및 사업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비정규센터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하 '재단')의 각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합 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비정규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비정규담당자회의)

① 비정규센터는 센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담당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정규담당자회의는 조합 각 본부에서 추천된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조합활동과 연

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비정규센터 구성원의 임면권)

비정규센터 구성원의 임면은 사무처 기준에 따른다.

제8조(비정규센터 재정)

① 비정규센터의 사업비는 재단 지원금과 조합 사업비로 한다.

② 비정규센터는 사업비 집행 내역을 운영협의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① 비정규센터는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목간 및 항간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해 운영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비정규센터의 경비는 조합의 '일반회계 경비 내부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정기대의원회에서 비정규센터 설치를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운영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은 우분투재단의 사업비 지원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며, 우분투재단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본조 중앙위 결정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연맹해산에 따른 특별규약

2022. 02. 09. 제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발전적 해산과 연맹 가맹조직들의 조직형태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노조는 2022년 연맹의 발전적 해산과 대통합을 위해 내부의 체계를 정비하고 대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제2조
노조는 연맹의 계승조직으로서 연맹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연맹 사무처 3인의 고용을 연맹해산 전에 승계하여야 한다.

제3조
노조는 연맹에서 대산별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조직들에 대한 산별 편제, 미전환조직에 대한 처리 및 지역본부 편제 조정 등을 위해 '대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노조는 연맹의 해산 결의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처리한다.

제5조
노조는 규약 제9조 제2항을 2022년에 시행되는 제5대 임원선거에 한하여 제1항 제1호의 피선거권은 '가입 후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제6조
노조는 연맹 가맹조직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조합비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별기금 납부를 유예한다. 단 유예된 산별기금은 연맹 해산시 노조로 귀속되는 연맹 자산에서 대체하도록 한다.

제7조
노조는 산별노조 향후 비전 수립을 통해 연맹의 강령과 정신을 대산별노조 사업에 담도록 한다.

부칙(2022.02.09.)

제1조(시행)
규약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규약은 연맹의 청산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